

# 4

## 공동주택(아파트)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연구책임자 **박민주** 청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 부회장, 산남푸르지오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감사  
공동연구자 **성기정** (사협) 일하는 사람들 이사, 공공임대주택 작은도서관 위탁운영  
**오혜자** (전)청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 회장, 초롱이네도서관장

234	<b>제1장 서론</b>
234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34	1. 연구 배경
236	2. 연구 목적
237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237	1. 연구 범위
238	2. 연구 방법
239	<b>제2장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의 이론적 배경</b>
239	제1절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의 개념 및 역사
239	1. 공동주택의 개념
240	2. 작은도서관의 개념
242	3.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의 개념 및 역사
243	제2절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의 특성 및 현황
243	1. 공동주택의 특성
244	2.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의 특성
246	<b>제3장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의 현황</b>
246	제1절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의 운영현황
246	1. 전국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의 운영현황
247	2. 청주시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의 운영현황
255	제2절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의 특성 및 현황
255	1. 청주시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의 특성
257	2. 청주시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의 운영현황
261	<b>제4장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관련법령 및 정책간담회 분석</b>
261	제1절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관련법령
261	1. 운영 및 관리
263	2. 이용자 범위
266	3. 재정
271	4. 시설

273	제2절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정책간담회 분석
273	1.정책간담회 개요
273	2.제도적 기반에 관한 의견
275	3.운영주체에 관한 의견
278	<b>제5장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b>
278	<b>제1절 제도적 기반 정비</b>
278	1.운영 및 관리 주체
281	2.이용자 범위
281	3.재정 및 지원
282	4.설치기준 및 시설
284	<b>제2절 통계적 기반 구축</b>
284	1.통계적 기반 현황
286	2.통계적 기반 구축의 필요성
287	<b>제3절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활성화 기반 구축</b>
287	1.국민임대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운영의 문제점
288	2.국민임대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제언
289	<b>제4절 네트워크 기반 구축</b>
289	1.공립공공도서관 네트워크
290	2.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네트워크
291	3.시민사회 네트워크
293	<b>제6장 결론 및 제언</b>
295	<b>참고문헌</b>

## 표목차

- <표 1> 공동주택관리 관련 법
- <표 2> 전국 작은도서관 설립주체별 운영현황
- <표 3> 2015 청주시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현황
- <표 4> 청주시 작은도서관 등록현황
- <표 5> 청주시 작은도서관 운영현황
- <표 6> 청주시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의무설치 단지현황
- <표 7> 청주시 지역별 아파트 대비 작은도서관 등록현황
- <표 8> 청주시 등록된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지역별 분포
- <표 9> 국민임대주택단지 주거 구조
- <표 10> 보육 및 교육 욕구
- <표 11> 문화 및 여가 교육에 대한 욕구
- <표 12> 청주시 국민임대주택단지 작은도서관 현황
- <표 13>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 <표 14> 관리주체의 관리영역
- <표 15> 공동주택과 복리시설의 정의
- <표 16> 공동주택관리법의 입주자등의 정의
- <표 17> 주택법 시행령의 작은도서관
- <표 1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내 작은도서관의 법적 위치
- <표 19>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주민공동시설 이용관련 개정내용
- <표 20> 「도서관법」 금전 등의 기부에 관한 근거
- <표 21>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2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
- <표 22> 충청북도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자생단체 소요비용 지원
- <표 2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표 24>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1 시설 및 자료의 기준
- <표 25> 공동주택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설치기준 주요내용 비교
- <표 26>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중 어린이집 관련 법령의 예외사항
- <표 27>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평가지표 비교

## 그림목차

<그림 1> 산남3지구 작은도서관 지도

<그림 2> 오창 중앙로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지도

<그림 3> 국민임대주택단지 주민의 욕구조사

<그림 4> 국가통계포털의 복리시설 현황 자료 화면

<그림 5> 국가통계포털의 작은도서관현황 자료 화면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1. 연구 배경

#### □ 작은도서관의 위상과 역할의 변화 과정

·현재의 작은도서관은 1960년대 마을문고운동에서 1990년대의 민간이 주도한 생활도서관, 주민도서관 등 다양한 형태의 소규모 도서관을 시대적 배경으로 함. 이 시기 작은도서관의 법적 지위는 ‘문고’였음.

·주민의 생활공간 내에 책 읽을 공간을 마련하여 미래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힘을 키우 시민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독서 및 도서관 운동’을 목적으로 하였음.

·도서관법 개정으로 ‘작은도서관’이라는 고유명칭과 법적 지위를 보장받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됨.

·2017년 현재 등록된 작은도서관의 수치는 6,346개<sup>1)</sup> 로 작은도서관에 대한 높은 관심과 함께 관계된 구성원의 증가로 이어진 작은도서관의 다양성과 불안정성이 나타나는 현상을 보여줌.

·작은도서관의 활성화에 대한 논의의 방향이 양적 확대가 아닌 질적 내실화와 운영의 안정화를 모색하고 있고 최근 곳곳에서 도서관법개정과 정책방향의 변화에 대한 토론회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이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음.

·주민들의 생활공간 내에 위치함에 따른 이용의 편의성으로 인해 공공도서관의 지역통합 서비스 포인트로서 역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며 마을의 독서·문화·복지·공동체의 거점 공간으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작은도서관이 늘어나고 있음.

#### □ 작은도서관 관련 연구 및 자료의 축적

·2009~2013년(1차), 2014년~2018년(2차)도서관발전종합계획과 전국 작은도서관 운영실태조사 및 운영활성화관련 연구보고서와 정책토론회 등과 기고문이나 강연자료 등 작은도서관의 양적확대 근거와 활성화에 대한 논의에 참고할 자료는 있음.

·그 중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실시한 연구용역인 「전국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및 운영활성화 방안 연구」에서는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을 위해 미비한 법적 제도적 영역을 분석하며 작은도서관의 등록과 폐관에 관한 사항, 시설 및 자료기준의 상향조정에 관한 사항, 인력기준 보완, 운영시간 기준조항 등 운영관련부분과 지방자

1)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http://www.smalllibrary.org>> (2017.10)

치단체의 조례기준안, 행정체계의 정비 부분도 조정방안을 제시하여 토론의 근거로 활용된 된 바 있음.

#### □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관련 연구 미비와 관련법의 배치

·작은도서관의 대부분은 사립으로 개인 및 단체가 운영하거나 교회, 아파트 등에 조성되어있어 활성화 방안이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한계 존재함.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의 경우 지역의 일반 작은도서관들과 동일한 기준의 평가지표나 실태조사 양식으로는 특성을 살리거나 문제를 드러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전국의 작은도서관 운영실태조사 통계에서 작은도서관의 지속적인 양적 증가의 부분을 들여다보면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이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현상이 있고, 이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작은도서관 의무설치 규정에 의한다고 볼 수 있음.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은 법적 의무시설이지만 운영주체와 관리주체의 범위가 명시되지 않아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함.

·시민의 자발성과 주체성에 의해 설립하고 운영되어 온 민간 작은도서관의 특성상 작은도서관을 꾸려가는 활동가들은 도서관법과 자치조례에 근거하여 작은도서관을 이해하는 반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을 토대로 한 아파트관리규약에 따라 복리시설로서 작은도서관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차이점이 있음.

·작은도서관을 바라보는 입장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현황파악과 관련 자료를 정리할 필요성이 있음.

·이를 통해 당사자들의 이해와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 마련과 관련법의 조정 및 제도화가 필요함.

#### □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활성화 관심 촉구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 중에서 지금까지 논의되지 않았던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의 실태 조사를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의 영역에서의 작은도서관에 대한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함.

·국민임대주택과 일반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운영의 차이점과 주택의 특성에 맞는 작은도서관 운영방안 마련의 필요성과 해법을 제시하고자 함.

·문화체육관광부는 2017작은도서관조성지원사업계획의 지원근거로서 「작은도서관진흥법」 제5조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4조(농어촌문화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조항을 들고 있음.

·2016년 국토교통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장기임대주택법) 개정안은 국민임대주택단지 입주자들의 교육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제정

을 통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근거가 되고 있음.

## □ 청주시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을 중심으로 조사연구

·청주시에 등록된 작은도서관은 2017년 6월 현재 129개소이며 그 중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은 45개소로 전체의 35%에 달하며 매년 증가되는 추세임.

·청주시와 청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는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을 위한 조례제정 토론회>, <작은도서관운영평가지표 개선을 위한 토론회>, <독서문화진흥조례제정 토론회>에 이어 2016년과 2017년 2회의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짐.

·이번 연구는 그간의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과 관련한 법령 및 자료조사, 청주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실태조사와 관계자토론을 바탕으로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쟁점을 모으고 정책제안으로 정리함.

## □ 현장에서의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과 관련법 정비의 필요성 인식

·청주시의 작은도서관 운영평가지표를 통해 선정되는 우수모범도서관의 경우 매년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이 대다수를 차지하며 모범적인 운영사례를 보여주고 있음.

·청주시의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의 경우 인근 작은도서관과의 소규모 협의회를 구성하여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정보공유와 마을공동체의 거점 공간으로서 지역주민의 독서문화공간 및 마을 사랑방으로 거듭나고 있음.

·그러나 운영자 및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문제점들의 대부분은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갈등과 공동주택관리법에서의 복리시설로서 작은도서관과 도서관법에서의 작은도서관이 서로 충돌되는 제도의 지점으로 인해 운영주체와 관리주체, 주민조직, 작은도서관 활동가들 간의 해석의 차이와 보는 시각의 차이에서 발생됨

- 이러한 문제점은 제도적으로 법령이 정비된다면 해결될 수 있음
- 미흡한 법령, 제도로 인해 민간 내부에서의 마찰이 더 이상 야기되지 않도록 적절한 운영방안을 제시하는 법령이 개선되어야 함.

## 2. 연구 목적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주체적으로 마을 작은도서관의 역할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고민하고 성장하는 것은 작은도서관의 설치 목적의 중 하나로 볼 수 있음.

·이번 연구는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이 마을 공동체의 주요한 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하고 내실화, 안정화를 추구하기 위한 것에 거시적인 목적이 있음.



- 사립작은도서관의 다수를 차지하는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의 관련법과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 정리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이와 더불어 지역사회와 공동체의 이해와 협력으로 자치 공간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 1. 연구 범위

#### □ 공간적 범위

-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 ▶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 청주시에 위치한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 ▶ 심층적 면담과 원활한 방문조사를 위해 물리적 거리가 근접하고 연구 활동이 용이한 청주시 지역의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만을 대상으로 함.

#### □ 시간적 범위

- 기준 년도
  - ▶ 2016년~2017년
  - 공동주택 관련법령 및 작은도서관 관련법령은 2017년 4월 기준으로 분석
  - 전국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결과 자료는 2016년 운영평가 결과를 분석
- 연구 기간
  - ▶ 2017년 3월 ~2017년 10월

#### □ 내용적 범위

- 전국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의 현황 및 운영실태 파악
- 청주시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의 운영현황 파악
-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 ▶ 제도적 기반 정비(법, 조례, 행정기구 정비)
  - ▶ 통계적 기반 구축(통계지표, 통계시스템 보완)
  - ▶ 청주시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활성화 기반 구축
  - ▶ 네트워크 기반 구축(공공도서관 연계, 협의회, 시민단체 및 사회적 기업 참여)

## □ 연구범위의 제한

- 공동주택의 범위
  - ▶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등을 포함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작은도서관 설치 대상인 아파트로 제한하여 분석
- 공공임대주택의 범위
  - ▶ 이 연구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다양한 형태 중 조사 대상을 국민임대주택으로 그 대상을 제한하여 분석
- 용어사용의 범위
  - ▶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을 ‘아파트작은도서관’과 같은 의미로 전제함.

## 2. 연구 방법

### □ 문헌분석

- 공동주택과 작은도서관의 개념과 특성 분석
-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관련 법령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법안의 작은도서관 시설 설치 기준 특성 분석
- 웹사이트 조사를 통한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의 운영현황 및 평가
- 통계자료 분석을 통한 현황 파악

### □ 전화 및 면접조사

- 작은도서관 운영자 및 자원봉사자들과의 전화 및 면담을 통한 현장의 심층문제 분석
- 공동주택 관계자와의 전화 및 면담을 통한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한 의견 수집
- 공립공공도서관의 작은도서관 담당자의 면담을 통한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의견과 협력 방안 모색

### □ 간담회

- 관계자 간담회를 통한 작은도서관 관련 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의 시설에 대한 요구 분석
-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의 운영에 대한 요구 분석
-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 방안 모색
- 공동주택관리법 및 도서관법 등 관련법안의 개선방안 모색

## 제 2장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의 이론적 배경

### 제1절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의 개념 및 역사

#### 1. 공동주택의 개념

##### □ 주택법의 '주택'의 개념과 구분

· 주택법의 주택은 가구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택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한 가구가 사는 단독주택과 여러 가구가 사는 공동주택으로 구분함. 그 중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있음.<sup>2)</sup>

· 「주택법」 제2조(정의)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함.<sup>3)</sup>

##### □ 공동주택의 개념

· 「주택법」 제2조제3호는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함.<sup>4)</sup>

· 공동주택은 벽, 복도, 계단, 일부를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부분과 독립된 가구가 거주하는 전용부분으로 구별됨.

· 공동주택은 일상적으로 '아파트'라고 부르는 주택의 유형을 말함.

▶ 아파트는 법률상 '공동주택'으로 명명되어 주택법에 의해 관리되어 오다가 최근 증가되는 공동주택의 문제점들을 원활하게 관리하고자 「공동주택관리법」을 제정하여 이를 기초로 한 시행령과 시행규칙<sup>5)</sup>을 기준하여 운영됨.

▶ 「공동주택관리법」의 주된 목적은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데 있음<sup>6)</sup>

2) 네이버 지식백과 부동산용어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86834&cid=42094&categoryId=42094>> (2017.10)

3) 「주택법」, [시행 2017.10.19.] [법률 제14793호, 2017.4.18., 타법개정]

4) 「주택법」, [시행 2017.10.19.] [법률 제14793호, 2017.4.18., 타법개정]

5)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의 각각의 목적을 표로 재구성함

6)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17.10.19.] [법률 제14793호, 2017.4.18., 일부개정]

<표 1> 공동주택관리 관련 법

구분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시행령	공동주택관리 시행규칙
목적	이 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영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작은도서관의 개념

### □ 작은도서관의 의미

· ‘작은도서관’이라 하면 대부분 규모가 작은 도서관이라고 생각하지만 정확한 의미라 할 수 없음.

· ‘작은도서관’이란 말은 단지 ‘크기가 작다’라는 형용사로서의 의미보다는 ‘운동’과 ‘정신’에 의미를 부여한 고유명사이기 때문이다. ‘작은도서관’ 운동이 민간에 의해 자발적으로 형성된 민간 자조 운동인 만큼 ‘크다’ ‘작다’라는 규모나 시설의 의미보다는 ‘운동’의 개념으로 생각해야 하며, 특히 지역주민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 생활친화적 문화공간이라는 중요한 특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 2006년 국립중앙도서관 발행 ‘작은도서관 운영매뉴얼’ 내용 중 작은도서관의 의미와 작은도서관이 만들어진 역사와 존재 까닭에 대해서 말한 부분임. 시대가 변하고 작은도서관의 내용도 많이 바뀌었지만, 이렇게 작은도서관의 철학과 가치의 이해를 토대로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 방향은 무엇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임.

· 지역 작은도서관의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도서관정책과 철학에 근거함. 지역주민을 위한 도서관 및 독서환경을 개선하고 조성해 나가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는 작은도서관의 운영활성화로 이어짐.

· 지난 10년간 지역별로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조례가 만들어지고 작은도서관 운영교육 및 지원방안이 확대되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작은도서관이 6천3백여 곳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양적 증가는 내실화에 이르지 못하여 오히려 실태조사와 평가지표에 의해 그 가치와 의미가 저평가 되고 있음.

· 작은도서관(특히 사립작은도서관)은 주민조직이 운영주체로서 분명한 의지와 철학을 가지고 있는가, 책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도서관의 장서구성에 잘 반영되어 있는가, 함께 책을 읽고 문화를 즐기는 공간으로서 잘 구현되고 있는가와 같은 질문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함.

· 우리지역의 지속적인 도서관발전계획은 무엇이고 작은도서관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요구하는지 토론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작은도서관의 실제적 의미와 가치가 정립될 것으로 보임.

## □ 작은도서관의 개념

-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행한 「작은도서관 운영매뉴얼」<sup>7)</sup>에서의 개념
  - ▶ 작은도서관은 일단 공공도서관이다 - 누구에게나 열린 도서관
  - ▶ 작은도서관은 우리 동네 도서관이다 - 생활밀착형 도서관
  - ▶ 작은도서관은 책문화사랑방이다 - 책과 사람이 만나는 도서관
  - ▶ 작은도서관은 마을공동체의 거점이다 - 마을사람들 교류의 거점
  - ▶ 작은도서관은 사람을 성장시키는 도서관이다 - 교육과 재능실현의 장
  - ▶ 작은도서관은 사회안전망이다 - 돌봄과 쉼터의 공간

· 시민들은 지난 10년에 걸쳐 작은도서관을 거점으로 하여 도서관의 문턱을 낮추고 도서관 및 독서문화를 생활 가까운 곳에서 누리며 문화시민으로서의 자존감을 높이고자 노력해 왔음. 민간의 작은도서관 운동은 이러한 시민문화운동의 일환으로 사회전반에 독서문화의 확산을 꾀하는데 기여해왔다고 볼 수 있음.

## □ 공공도서관의 지역통합 서비스거점의 개념

· 작은도서관은 자체 자료와 자원만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정보서비스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움. 공공도서관과의 협력 속에서 상호대차를 통해 작은도서관의 부족한 자료를 보완해주고 도서관 문화 프로그램의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함께 홍보하는 방향이 추진되고 있음.

· 공공도서관 홈페이지와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소식지에 작은도서관을 소개하고 작은도서관의 문화프로그램을 홍보하거나, 공공도서관에서 제작한 소식지나 행사 리플렛을 작은도서관에 비치하여 공공도서관 문화 프로그램을 지역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음.

· 독서인구 확대와 독서문화 증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이 역할을 나누어 진행할 수 있음.

## □ 특화작은도서관의 개념

·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의 경계를 넘나들며 보다 전문화되거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작은도서관이 늘어나고 있음. 생활밀착형이라는 개념을 주민들의 계층별 주제별 독서요구에 부응하고 다가간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함. 전문 혹은 전용 작은도서관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평가지표 밖에서 영역을 확대하고 있음. 문화다양성을 실현하는 독서 및 도서관정책을 요구하는 현장의 유의미한 변화라고 볼 수 있음.

7) 류반디 외4, 「작은도서관 운영매뉴얼」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2014), 14-16.

### 3.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의 개념 및 역사

#### □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의 개념

- 「주택법」 제2조제14호 '복리시설'의 개념

▶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을 말하며,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과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sup>8)</sup>로 정의함.

- '주민공동시설'의 개념

▶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도서실(정보문화시설과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포함한다), 주민교육시설(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의 거주자를 위한 교육장소를 말한다), 청소년 수련시설, 주민휴게시설, 독서실, 입주자집회소, 공용취사장, 공용세탁실,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의 단지 내에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 그 밖에 가목부터 파목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가 인정하는 시설을 말함.<sup>9)</sup>

▶ 주민공동시설 설치에 대한 의무규정에 따라 세대수에 따른 의무시설을 건설하는 정해진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함.

- 150세대 이상의 경우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 300세대 이상의 경우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 500세대 이상의 경우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 □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의 역사

· 1994년 12월30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복리시설로 제55조 5항에 신설「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한 500세대이상 단지에 시설면적 33㎡이상, 열람석 6석이상, 1천권이상 서적을 비치하도록 함.

- 2006년 1월6일 3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로 확대 강화됨.
- 2009년 10월19일 「문고」에서 '작은도서관'으로 명칭 변경됨.

· 2013년 조항 삭제와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시행으로 제55조의2 주민공동시설로 편입되어 500세대이상 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완화됨.

8) 「주택법」 [시행 2017.10.19.] [법률 제14793호, 2017.4.18., 타법개정]

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7.10.17.] [대통령령 제28373호, 2017.10.17., 일부개정]

## □ 작은도서관 설치 기준 변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설치기준은 작은도서관의 설치 기준을 「도서관법 시행령」별표1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함.

·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1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은 소방시설의 설치,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부착, 개별기준으로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을 제외한 건물면적 33제곱미터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도서관자료 1,000권 이상으로 정함.

· 1994년 12월31일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 제정 후 「도서관법 시행령」으로 법령만 변경되고 설치 기준은 변화 없음.

## 제2절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의 특성

### 1. 공동주택의 특성

#### □ 개인주의와 공동체의 양립

· 폐쇄적인 개인 주거공간의 편리성은 개인주의적 특성을 강화하며 이로 인해 공동체 활동에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며 비참여적인 태도를 양산함.

· 전용공간을 제외한 공용공간에 대한 관리를 관리비에서 지출하고 관리사무소에 위탁을 하는 형태로 인해 공동시설의 운영에 대한 관심도가 적고 자발적으로 작은도서관과 같은 형태의 공용공간의 운영 및 활동에 참여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참여의지가 낮음.

· 특히 고층화 및 대단지화 된 공동주택일수록 같은 라인에 거주하는 세대수가 많고 대면의 기회가 적어 이러한 양상이 더욱 두드러짐.

· 아파트 운영에 참여하는 소수의 인원은 주로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노인회, 부녀회, 동호회 등의 형태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제한된 인원이며 이들을 중심으로 아파트의 여러 사안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고 결정되어지는 경우가 많음.

· 공동주택의 운영 및 관리 정보는 관심을 가진 제한된 소수에게 독점되고 관심이 적은 주민들의 정보접근이 어려워 더 무관심하게 되는 현상이 반복되어 왔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은 아파트운영과 시설 및 설비와 관련된 공사 등에 대해 정보공개의 방법과 횟수를 확대하고 이를 법에 명시함.

## 2.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의 특성

### □ 설치의 의무화

- 사립 작은도서관 중 유일하게 의무규정에 의해 강제로 설치되는 형태임.
- 개인 및 단체 등 자발적인 의지로 설립되는 다른 사립 작은도서관들과 달리 설립의지와 무관하여 주체성과 책임성이 결여되며 조직과 행정경험이 있는 활동가가 부족함
- 입주민 등의 공동재산권의 공간으로서 다른 사립작은도서관처럼 자유로운 비전 설정이나 주체적인 철학을 담아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음.
- 건설사는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 법으로 정한 의무시설의 일부로 작은도서관을 지었을 뿐 어떠한 가치나 신념을 가지고 설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는 작은도서관의 공간구성이 유휴 공간에 채워 넣기 방식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알 수 있음.
- 최초 잘못된 공간 구성은 추후 공간의 재구성, 용도 변경 등의 불필요한 비용과 행정절차를 야기하기도 함.

### □ 공동주택단지 내 다양한 조직과의 관계

- 공동주택은 자생단체를 구성할 수 있어 노인회, 부녀회, 동호회 등 다양한 조직들과 함께 작은도서관이 존재하게 됨.
- 자생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비 지원 요청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지원의 여부가 결정되며 이러한 사업비는 잡수입<sup>10)</sup>에서 나누어 쓸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규약준칙에 명시되어 각 아파트 관리규약에 명시되어 있음.
- 이로 인해 각 조직의 사업비 구성의 형평성이 맞지 않을 경우 단체 사이에 갈등이 야기될 수 있음.
- 작은도서관의 경우 자원봉사자 조직이 구성되거나 또는 공동체활성화 단체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단순히 도서관이라는 건물로 해석하며<sup>11)</sup> 이로 인해 자생단체와는 구별되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에서 재정에 대한 회계처리를 담당하고 있음.
- 공동시설의 유지관리 및 공동체활성화 단체의 지원에 대해 투명성과 형평성이 지적되는 사례가 많으며 이러한 문제는 입주민등의 민원 사례에 다수를 차지함.

10) “잡수입”이란 금융기관의 예금이자, 연체료 수입, 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사용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말한다.

11)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및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관리과 담당자의 해석



## □ 관리주체의 운영의 전문성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과 관리사무소장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교육시 공동체활성화 및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교육의 부재와 정보 부족으로 관리주체의 운영에 대한 전문성 확보가 어려움.
- 이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인식부족과 운영의지 부족으로 연결됨.
- 이런 이유로 의무설치대상 공동주택단지 내의 작은도서관 절반이 관리자 부재로 문을 닫거나 기증도서로만 채워진 상태로 관리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음.
- 청주시 작은도서관 의무설치 대상 아파트 중 절반이 입주 후에도 바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으며 창고로 방치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

## □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의 역할

- 공동주택단지 내 의무설치 복리시설 중 남녀노소의 경계가 없는 유일한 공간이며 이로 인해 전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아파트공동체 활성화의 거점공간으로 활용됨.
- 사회적 취약계층인 영유아 및 노인, 학업으로 바쁜 학생, 육아와 가사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전업주부, 바쁜 직장인 등 시간을 내어 공립공공도서관으로 이동하기 어려운 점을 거주하는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을 통해 쉽고 편하게 방문할 수 있게 하여 전주민의 독서문화 증진을 도울 수 있음.
- 작은도서관은 주민의 독서문화 증진 뿐 아니라 평생학습을 책임져 100세 시대에 맞춰 마을의 평생교육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음.
- 공동주택단지 내 30대에서 50대 사이의 젊은 세대를 모으고 다양한 사안들을 고민하고 해결하며 서로 연대를 가능하게 하는 민주시민의 공간적 성격을 포함하기도 함.
- 아파트와 관련된 관리비 관련 교육 전문용어나 아파트운영 관련 법규 등을 주민에게 교육하고 알리는 역할이 가능하여 아파트의 투명한 운영을 이끌어냄.
- 공동주택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여 다양한 주민과 공유하여 공동체의 참여의식을 높일 수 있음.
- 다양한 정보제공은 정보의 독점화를 막아 민주적인 아파트 운영을 용이하게 함.
- 마을 관련 이슈를 정리하여 공유하고 교육 및 공동체 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함.

## 제 3장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의 현황

### 제1절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의 운영현황

#### 1. 전국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의 운영현황

##### □ 제도적 기반현황

· 선형연구로 「2011 전국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및 운영활성화 방안 연구」의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수요조사<sup>12)</sup>에 보고된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의 시설 관련 현황은 아래와 같음.

-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의 전용 면적 현황은 평균 91.1㎡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음.
-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의 열람석 현황은 평균 27.8석으로 나타났음.
-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의 자료보유 현황은 평균 약 3,579권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2011년 당시의 조사보고서임에도 시설 관련 조례 기준에 평균값이 매우 상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의 증가

·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전국작은도서관실태조사 및 운영평가에 따르면 전국 작은도서관의 전체 개소 수는 전년도(2015년) 5,595개 대비 319개 증가한 5,914개이며, 이중 공립 작은도서관은 1,403개로 2015년 1,364개보다 39개 증가하였고 사립 작은도서관은 4,511개로 2015년 4,231개보다 280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 사립 작은도서관 4,511개 가운데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이 1,450개 (32.1%)로 가장 많음.<sup>13)</sup>
- 전체 사립 작은도서관의 증가추세에 비해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은 매우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임.
- 전체 작은도서관 가운데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의 수는 <표 2><sup>15)</sup>과 같이 2012년 747개(24.4%), 2013년 945개(24.9%), 2014년 1,173개(29.8%), 2015년 1,328개(31.4%), 2016년 1,450개(32.1%)로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추세임.
-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의 증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2항에 따른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작은도서관의 설치 의무화로 인한 것으로 판단됨.

12)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전국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및 운영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2011), 168-171.

13) (사)작은도서관을만드는사람들, 「2016년도 작은도서관실태조사 및 운영평가보고서」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2017), 27.

15) 문화체육관광부, 전국작은도서관실태조사 및 운영평가보고서 p29 재구성함

<표 2> 전국 작은도서관 설립주체별 운영현황

년도/ 주체	개인 및 단체	새마을 문고	종교 시설	법인	아파트 작은 도서관	모름 /무응답	계	공립	합계
2012	887	508	726	150	747	39	3,057	894	3,951
(개수/%)	29.0	16.6	23.7	4.9	24.4	1.3			
2013	1,068	625	835	234	945	91	3,798	888	4,686
(개수/%)	28.1	16.5	22.0	6.2	24.9	2.4			
2014	1,178	416	934	231	1,173	0	3,932	1,302	5,234
(개수/%)	29.9	10.6	23.8	5.9	29.8	0			
2015	1,219	421	1,023	240	1,328	0	4,231	1,364	5,595
(개수/%)	28.8	9.9	24.2	5.7	31.4	0			
2016	1,295	382	1,114	270	1,450	0	4,511	1,403	5,914
(개수/%)	28.7	8.5	24.7	6.0	32.1	0			

## 2. 청주시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의 운영현황

### □ 제도적 기반 현황

· 「도서관법 시행령」의 작은도서관의 설치기준에 따른 청주시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의 현황<sup>15)</sup>은 <표 3>과 같이 법적 기준보다 그 수치가 상회하고 있음.

· 청주시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의 건물면적은 그 수치가 법적 기준보다 무려 4배 가까이 상회하고 열람석은 6배, 보유 장서수는 적게는 5배에서 많게는 8배로 법적 의무기준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냄.

<표 3> 2015 청주시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현황

구분	건물면적 (㎡)	열람(석)	보유장서수 (권)	도서구입비 (원)	인건비 (원)
법적기준	33	6	1,000	기준없음	기준없음
모범작은도서관 평균	129.2	37	8,048	2,905,797	5,384,026
그 외 작은도서관 평균	120.1	36	5,339	1,201,721	1,760,000

· 청주시 모범작은도서관<sup>16)</sup>의 평균면적과 열람석이 그 외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의 수치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면적과 열람석의 수치는 활성화를 좌우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음을 알 수 있음

15)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https://www.libsta.go.kr>> 2015\_작은도서관\_데이터 재구성함(2017.04)

16) 청주시는 작은도서관의 운영평가지표의 환산점수순으로 지원대상 관의 1.5배수를 1차 평가로 선정하고 외부평가단의 지원대상 도서관 실사를 통한 2차 평가를 통해 최종 모범작은도서관 18개소를 선정, A,B,C 등급별로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여 작은도서관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고 있음.(2017년 청주시작은도서관 사업 기준)

- 보유장서의 경우 모범작은도서관의 경우 평균 8,048권, 그 외 작은도서관의 경우 평균 5,339권으로 2,709권의 차이를 보아 활성화와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음.
- 활성화의 척도는 도서구입비와 인건비 지출의 차이에서 나타남.
- 작은도서관의 설치기준 이외 운영에 대한 의무사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재정과 인력부족 등으로 인한 활성화가 어려운 현실임.
- 모범작은도서관의 경우 2015년 평균 2,905,797원을 도서구입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그 외 작은도서관의 경우 평균 1,201,721원을 지출하였음.
- 인건비의 경우 모범작은도서관은 평균 연간 5,384,026원을 지출하며 그 외 작은도서관은 평균 1,760,000원으로 3배 이상 차이남.
- 청주시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의 외부주민의 대출가능여부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이 타아파트 주민에게 도서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대출이 가능한 곳의 경우 관리규약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과정 없이 대출반납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의 외부주민에 대한 사용 허가가 필요한 경우 관리규약이 정한 주민 동의를 절차가 누락된 사항으로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음.

#### □ 통계적 기반 현황

•청주시에서 2011년 11월에 2차에 걸쳐 조사한 “10분 거리 내 작은도서관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현황조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청주·청원 통합 이전의 청주시 지역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한 작은도서관 설치 의무대상 단지가 총 76개이며 대상 아파트 중 청주시에 등록된 작은도서관은 4개소, 작은도서관이 설치되었지만 청주시에 등록되지 않은 곳은 22개소, 설치와 등록 모두 되지 않은 곳은 50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청주시는 미등록 22개소에 대한 정상운영화 추진을 위한 등록 유도과 미설치 50개소에 대한 작은도서관 조성권고 등을 통해 100개소 이상 정상운영 및 운영활성화 지원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당시에 진행함.

•현재 청주시는 <표 4><sup>17)</sup>과 같이 총등록 190개소 중 등록중 126개소, 폐관 64개소로 폐관을 33.7%로 나타남.

<표 4> 청주시 작은도서관 등록현황

구분	총등록	폐관	등록
도서관(개수)	190	64	126
비율(%)	100	33.7	66.3

기타:개인,공공단체(복지관,사회단체),법인

17) 청주시립도서관 홈페이지 <<http://library.cheongju.go.kr>> (2017.3)

▶ 운영주체별 작은도서관의 분포는 <표 5><sup>18)</sup>과 같이 종교기관에서 설립한 작은도서관이 36개소로 전체 작은도서관의 29%를 차지하며, 시청 관할 작은도서관이 4개소로 3%, 기타(단체 및 개인)운영되는 작은도서관이 39개소로 31%,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이 47개소로 가장 높은 37%를 차지함.

▶ 이는 2015년 전국 작은도서관실태조사 결과 설립주체별 운영현황의 아파트 비율 31.4%보다 높은 수치임.

<표 5> 청주시 작은도서관 운영현황

구분	소재지별				운영구분		운영주체별			
	상당구	청원구	흥덕구	서원구	공립	사립	교회	아파트	시청	기타
도서관수	31	23	36	36	7	119	36	47	4	39
비율(%)	24	18	29	29	6	94	29	37	3	31

기타:개인,공공단체(복지관,사회단체),법인

· 지방자치단체 관련부서의 관리감독 및 운영실태 파악

▶ 2011년 공동주택단지 내에 위치한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조사했을 당시부터 현재까지 청주시에 등록된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은 4개소에서 47개소로 10배 이상 증가됨.

▶ 지방자치단체 관련부서의 지속적인 관심을 바탕으로 의무설치 아파트에 대한 관리감독과 운영실태 파악이 지속적으로 필요함.

▶ 운영실태에 따른 개관 및 폐관유도를 통해 전체적인 작은도서관의 질적 수준의 향상이 가능함.

· 청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의무화 아파트 현황

▶ 청주시 공동주택(아파트)은 2017년 3월말 기준 총 513개 단지이며 이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주민공동시설내 작은도서관 의무설치 대상 아파트는 총 109개에 해당됨.

▶ 이는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기별 세대수의 기준이 최초 500세대에서 2006년 300세대로 강화되었다가 2013년 500세대로 다시 완화된 내용에 해당되는 단지수임.

- 사업계획승인일을 기준으로 1994년 12월30일부터 2006년 1월8일까지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65개 단지이며, 2006년 1월9일부터 2013년 6월16일까지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37개 단지, 2013년 6월17일부터 2017년 3월31일까지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7개 단지로 청주시 전체 아파트 513개 중 109개의 공동주택이 작은도서관 설치 의무 대상단지로 확인됨.

18) 청주시립도서관 홈페이지 <<http://library.cheongju.go.kr>> (2017.3)를 바탕으로 재조사 후 가공함, 홈페이지의 운영주체별 작은도서관의 개소수가 원데이터의 조사결과와 다른 것이 확인되어 시립도서관 담당자와 확인 후 재조사 한 결과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의 운영주체 중 사회적기업이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 내 작은도서관 중 2개소가 아파트작은도서관으로 분류되지 않고 기관 및 단체 작은도서관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공임대주택 내 사회적기업이 운영하는 그 외 작은도서관들이 아파트작은도서관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점과 본 연구의 대상이 아파트작은도서관이라는 점의 기준이 공동주택단지 내에 위치하며 아파트의 주민조직과 연계된 시설과 운영체계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을 들어 본 연구자는 해당 2개소를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의 개소수에 포함하였음을 밝힌다.

- 작은도서관 설치 의무단지 총 109개중 50.5%인 55개소는 현재 작은도서관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이며 38.5%인 42개소는 청주시에 등록된 상태임. 나머지 11%인 12개소는 청주시에 등록은 되지 않았지만 실제로 운영 중으로 확인되었음. 또한 청주시 전역의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의 등록수가 47개소로 확인된 원인은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설치의무대상이 아닌 아파트에서도 자체적으로 작은도서관을 설치하여 청주시에 등록 및 운영 중인 곳이 5개소로 나타났기 때문임. 이들 아파트는 상당구에 1개소, 청원구에 1개소, 흥덕구에 1개소, 서원구에 2개소로 확인됨.<sup>19)</sup>

<표 6> 청주시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의무설치 단지현황

구분	청주시 아파트현황	설치대상 아파트	등록 아파트	미설치	설치/미등록
개수	513	109	42	55	12
비율(%)		100	38.5	50.5	11

▶ 청주시의 지역별 아파트 분포도를 살펴보면 전체 아파트단지 513개 중 흥덕구가 147개로 28.7%, 청원구가 132개로 25.7%, 서원구가 130개로 25.3%, 상당구가 104개로 20.1%로 확인됨.

▶ 이 중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작은도서관 의무설치 대상에 해당하는 아파트의 비율은 전체아파트 513개 중 109개로 전체의 21.2%로 나타남.

▶ 구별로 의무설치 단지를 살펴보면 흥덕구가 34개 단지로 31.2%, 서원구가 33개로 30.3%로, 청원구가 29개로 26.6%, 상당구가 13개로 11.9%를 차지함.<sup>20)</sup>

<표 7> 청주시 지역별 아파트 대비 작은도서관 등록현황

구분	상당구		청원구		흥덕구		서원구		전체	
	수	구별 비율 (%)	수	구별 비율 (%)	수	구별 비율 (%)	수	구별 비율 (%)	합계	평균 (%)
전체아파트	104	20.3	132	25.7	147	28.7	130	25.3	51.3	
대상아파트	13	11.9	29	26.6	34	31.2	33	30.3	109	21.2
설치도서관	2	3.7	13	24.1	16	29.6	23	42.6	54	49.5
설치율(%) (대상아파트 대비)	15.4		44.8		47.1		69.7		49.5	
등록도서관	0	0	11	26.2	13	31.0	18	42.9	42	36.7
등록률(%) (대상아파트 대비)	0		37.9		38.2		54.5		38.5	
미대상단지 등록도서관	1		1		1		2		5	

19) 청주시청 공동주택현황(2017. 3월말 기준)자료와 청주시립도서관 작은도서관현황 자료 재구성함.

20) 청주시청 공동주택현황(2017. 3월말 기준)자료와 청주시립도서관 작은도서관현황 자료 재구성함.

▶ 청주시에 등록된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sup>21)</sup>과 같이 전체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47개소 중 서원구가 20개소로 43%를 차지해 가장 높고 흥덕구가 14개소로 30%, 청원구가 12개소로 26%, 상당구가 1개소로 2%를 차지함.

<표 8> 청주시 등록된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지역별 분포

구분	상당구		청원구		흥덕구		서원구		전체 합계
	수	구별 비율 (%)	수	구별 비율 (%)	수	구별 비율 (%)	수	구별 비율 (%)	
등록도서관	1	2	12	26	14	30	20	43	47

## □ 네트워크 현황

### ·청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

▶ 청주시에 정식 등록된 작은도서관 관련단체는 ‘청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가 있음. 이는 청주·청원 통합으로 이전의 청원군작은도서관협의회와 합쳐 관종별 구분 없이 청주시내 작은도서관 45개소가 회원도서관으로 활동 중임.

▶ 주요 활동내용으로 회원 도서관과의 매월 정기회의를 통한 정보공유, 작은도서관 운영자 워크숍, 지역출판사 및 작가, 서점조합과의 협력을 통한 지역서점 살리기, 작가와의 만남, 청주시 책 축제 행사,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작은도서관학교 등이 있으며 청주시립도서관과 연계하여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함.

▶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관련하여 2016년에는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와 공동으로 ‘아파트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 진단과 전망’의 제목으로 정책포럼을 실시함.

### ·지구별 네트워크 현황

▶ 대규모 아파트단지들을 중심으로 한 마을단위의 네트워크를 이룸.

- 산남동 3지구의 8개 작은도서관 네트워크 산남동작은도서관협의회, 오송과 강내 지역의 4개의 작은도서관이 모인 오송강내작은도서관연합회, 청주시 LH국민임대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들을 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오창 지역의 5개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의 형태가 존재함.

- 청주시 모범작은도서관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연합 형태를 이루는 위 지역의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들의 선정비율이 높음.

- 이는 개별적인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의 운영보다 지역별로 네트워크를 이루어 활동하는 것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전체적인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고 판단할 수 있음.

21) <표 8> 청주시립도서관 작은도서관 목록을 원자료로 실제 조사후 재구성함.(2017. 3월말 기준)

▶ 산남동작은도서관협의회

- <그림 1><sup>22)</sup>의 청주시 서원구 산남3지구에 위치한 8개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이 2012년부터 네트워크를 형성함.

- 최근 4년 동안 청주시 모범작은도서관으로 8개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중 5개소가 누적 총 17회 선정됨.

- 활성화의 요인으로는 정기회의를 통한 정보 공유, 마을단위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 평생학습관과 연계한 사업을 통한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활동 지원, 마을행사 참여를 통한 작은도서관의 인식 확대 등 작은도서관이 마을의 독서문화를 책임지는 중심 역할을 함.

- 지역적 배경으로 기존에 형성된 마을공동체조직과 지역구 의원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이 있었음.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네트워크인 아파트협의회, 마을신문 발행 등 마을전체의 공통적인 이슈를 논의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었음.

- 8개단지의 최초 입주시기가 비슷하고 2012년을 전후로 작은도서관을 중심으로 교육공동체를 실현하고자 하는 주민모임과 지역구 시의원의 도서지원이 작은도서관 활동을 본격화 함.

- 지역의 다양한 공동체 조직과 활동가가 직접적으로 작은도서관의 운영자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축제 및 각종 행사시 각 공동체의 대표들이 모여 회의를 통해 서로 소통하며 일을 함께 도모함.

- 마을신문을 통해 작은도서관 관련 소식을 마을주민에게 전달하면서 활성화를 도움.



<그림 1> 산남3지구 작은도서관 지도

22) 산남3지구 작은도서관 지도로 산남동작은도서관협의회에서 제작함.



▶ 오창 중앙로 지역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 청주시 청원군 오창읍 중앙로 주변 8개 아파트 단지 중 한곳을 제외한 7개소<sup>23)</sup>가 청주시에 등록된 작은도서관임. 이 중 5개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운영자는 매월 정기모임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마을단위의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며 네트워크를 이루어 활동함.

- 이들 5개소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은 최근3년 동안 11회에 걸쳐 모범작은도서관으로 선정됨.



<그림 2> 오창 중앙로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지도

▶ 오송강내작은도서관연합회

- 오송과 강내지역의 작은도서관 4개소가 연합을 이루며 인근에 위치한 오송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하여 마을축제나 작은도서관 자원활동가 교육 등을 기획하고 진행함.

- 오송강내작은도서관연합회 4개 도서관 중 2개소가 청주시 모범작은도서관으로 총5회 선정됨.

▶ 지구별 단위의 네트워크의 특성

- 앞에서 살펴 본 산남동과 오창지역 경우 청주시 평생학습관과 연계하여 평생학습마을만들기사업, 행복학습센터 사업, ‘딩동찾아가는학습’과 같은 동아리활성화 사업 등을 진행하며 지역 주민의 독서 및 취미동아리를 결성하고 마을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작은도서관이 중심이 되어 기획하고 진행함.

23) 다음지도 <<http://map.daum.net/>> 재구성함 (2017.04)

- 2107년 청주시평생학습관의 ‘행복학습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3곳이 산남동, 오창, 오송의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인 것을 볼 때 마을의 작은도서관네트워크가 갖는 지역에서의 역할을 살펴 볼 수 있음.

- 지구단위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개별적인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들에 비해 정보공유가 쉬우며 지역주민들의 작은도서관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 이웃 단지의 좋은 예를 통해 작은도서관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공감대가 형성되기 쉽고 이를 토대로 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하기 쉬워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용이한 측면이 있음.

- 지구단위의 네트워크의 장점은 비슷한 시기에 입주를 하는 아파트단지가 많아 작은도서관의 개관 시점이 비슷하고 같은 수준에서 도서관들이 출발한다는 공통점이 있음.

- 아파트 평형이나 지역주민의 개인별 수준도 비슷한 경우가 많아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마을공통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기 용이함.

- 정주여건이 비슷하여 작은도서관이 각각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도출함에 있어서 지역적 요소와 결부시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 등과 연계하는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의 활성화에 효과적임.

- 지구단위 또는 마을단위의 시민사회단체 또는 마을공동체 활동가들의 활발한 활동은 작은도서관의 활성화와 동반되거나 선행되는 사례가 흔하며 그들은 작은도서관이 갖는 의미 중 하나인 마을공동체 활동을 이미 경험한 유경험자가 많고 기관의 사업이나 운영 및 관리 업무에 대한 처리능력을 지님.

-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으로 활동가를 발굴하고 성장시켜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기도 함.

-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NGO를 비롯한 동네 밖 시민사회단체들과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의 협력은 구체적인 방법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음.

## 제2절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의 특성 및 현황

### 1. 청주시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의 특성

#### □ 국민임대주택단지의 특성

· 국민임대주택단지는<sup>24)</sup> IMF이후 경제위기로 서민층의 주거불안이 심화됨에 따라 도입한 제도로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 공급하여 2년 단위의 임대차계약으로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분양전환 되지 않는 것이 특징임.

#### ▶ 입주민의 사회경제적 특징

-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이 엄격<sup>25)</sup>하여 국민임대주택단지 거주세대는 수급자, 차상위 계층, 저소득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노인세대 등 사회적 배려대상의 거주 비율이 높음.

- 내 집 마련의 전초단계로 잠시 머물러 사는 곳으로 인식되어 주민자치조직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내 집이 아니라는 정주의식의 부재로 주민커뮤니티활동이 다른 공동주택단지에 비해 소극적임.

- 장기불황과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저소득층의 주택구입의 기회가 희박해져 국민임대주택단지에 오랫동안 거주하기 희망하는 세대가 점차 늘어나고 있고 거주기간동안 교류를 통해 마을에서 따뜻한 이웃의 정과 질적으로 충족된 삶을 원하는 세대도 늘어나는 추세임.

- 국민임대주택단지는 공동주거형태로 일반 공동주택이 가지고 있는 이웃 간의 단절, 주민간의 갈등 같은 문제점 외에도 '휴거'<sup>26)</sup>라는 신조어가 탄생할 만큼 지역사회에서 저소득계층의 밀집지역이라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어 이중적인 사회문제를 가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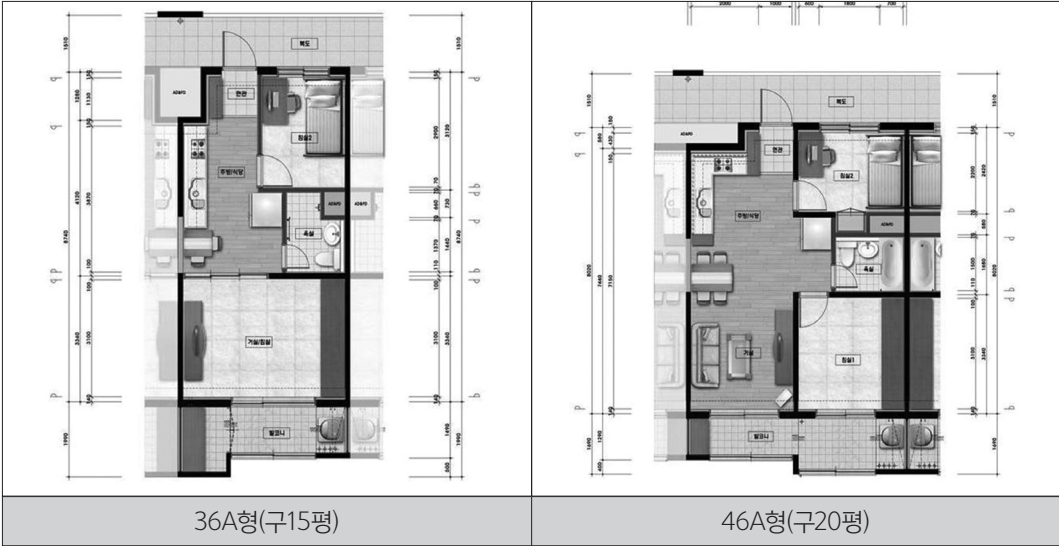
#### ▶ 국민임대주택단지 주거형태의 특징

- <표 9>와 같이 36㎡과 46㎡ 형이 대부분의 주거형태로 사적공간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입주자들의 주민공동시설에서의 커뮤니티활동 욕구가 점점 커지고 있으며 마을공동체 형성 과정에서의 그 역할이 중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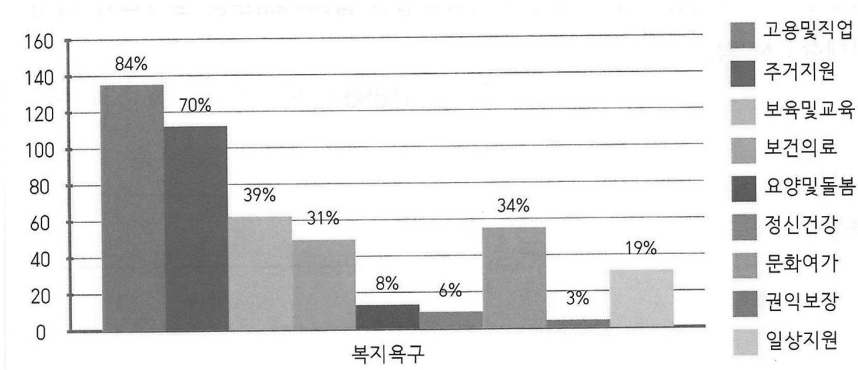
24) 이 보고서의 연구범위는 청주시에 소재해 있는 50년장기공공임대주택과 부도아파트매입임대를 제외한 30년장기공공임대인 국민임대주택단지만으로 제한함.

25) 2017년 기준 입주자격은 4인 가족기준 월수입 3,941,190원, 자동차 2,522만원 이하임.

26)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브랜드 '휴먼시아'와 '거지'의 합성어의 줄인 말로 일부 초등학생들이 휴먼시아 아파트에 거주하는 친구들을 비하하여 부르는 말, 거주지에 따라 계급을 나누려는 표현으로 주거와 관련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전체복지욕구 순위



<그림 3> 국민임대주택단지 주민의 욕구조사

#### ▶ 국민임대주택단지 주민의 욕구조사<sup>27)</sup>

- 2015년 성화개신죽림동 국민임대주택단지 거주자 3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복지욕구조사서에 따르면 <그림 3>과 같이 전체 욕구 중에 보육 및 교육에 대한 욕구가 39%로 3위, 문화, 여가에 대한 욕구가 34%로 4위로 나타나고 있어 국민임대주택단지 주민들의 교육 및 문화에 대한 욕구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보육 및 교육 욕구는 방과 후 돌봄에 대한 욕구가 41.9%로 가장 높고 관련 비용 지원이 35.5%를 차지하여 방과 후 교육이나 학습지원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보육 및 교육에 대한 주관

27) 성화개신죽림동 민관복지협의체, 「국민임대아파트거주자 복지욕구조사 보고서」 (청주: 성화개신죽림동 주민센터, 2015), 35-42.

식 답변을 살펴보면 맞벌이 부부를 위한 방과후 교육과 돌봄에 대한 많은 의견이 제시되어 무상 돌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지원확대를 통해 학습비, 문화체험, 중식비 등의 지원을 바란다는 의견이 많았음.

<표 10> 보육 및 교육 욕구

	빈도	비율(%)
보육 및 유아교육	7	11.3
방과 후 돌봄	26	41.9
특기적성 교육	4	6.5
특수교육	1	1.6
양육 및 진로상담	1	1.6
부모교육	1	1.6
보육 및 교육관련 비용지원	22	35.5
합계	62	100.0

- 문화 및 여가 교육과 관련한 주관식 응답으로 공연, 영화, 전시회 등 다양한 문화 부문의 무료 관람이나 참여 등을 원하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아파트 단지 내 운동시설, 체육시설,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해달라는 의견이 제시됨. 또한 아파트 내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고 가족여행 지원에 대한 욕구도 높았으며 휴양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도 있었음.

## 2. 청주시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의 운영현황

### □ 가경지구 가로수마을작은도서관(2009년)

- 청주청원지역에서 교육문화 네트워크 사업을 진행하던 '삶과교육'<sup>28)</sup>은 청주시내 국민임대주택단지에 교육문화센터 설립을 추진하였고 2009년 가경동에 있는 가로수마을휴먼시아아파트와 삶과교육은 '주민공동시설 무상임대 사용협약서'를 작성하여 LH와 민간단체가 외부 기업<sup>29)</sup>의 후원을 받아 국민임대주택단지에서 작은도서관을 중심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의 첫걸음이 시작됨.

- 상근활동가들에 의해 작은도서관이 만들어지고 독서문화진흥이라는 도서관 고유의 활동과 더불어 주민사랑방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자원들을 끌어들임. 요가교실, 주민독서모임, 공예교실, 미디어교실 등을 통해 주민들을 모았고 점차 커뮤니티를 형성해 나감.

-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내는 주민들을 중심으로 임파워먼트를 키워내 의사결정 권한을 넘기는 작업을 진행하여 실무자는 주민활동의 도우미로 작은도서관이 조직해서 시

28) 삶과교육은 청주 청원지역에서 교육, 문화, 복지 활동을 전개했던 지역 네트워크 단체로 후에 사회적협동조합 일하는사람들의 모태가 됨.

29) 삼성꿈장학재단의 지역네트워크지원사업, (주)한화의 사회복지시설개선택원사업 등.

작했지만 주민조직이 생기면 보조자 역할로 물러나는 구조를 만들어 수동적이고 혜택만 받으려 하는 주민들이 점차 바뀌기 시작함.

- 도서관에 관심 있는 적극적 주민들이 등장하여 도서관 관장, 실무자, '일하는사람들'<sup>30)</sup> 상근 활동가로 조직에 결합함.

- 현재 가로수마을작은도서관은 20여명의 주민자원봉사자와 운영위원회 조직에 의해 재정과 회의구조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관리사무소, 어린이집, 노인회, 아동센터소속 활동가, 작은도서관 주민대표로 회의구조가 구성되어 마을공동체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 성화, 죽림지구 (2010년~)

- 가경동에서의 활동을 바탕으로 2010년 성화동에서도 주민사업의 중심인 작은도서관 설립이 계속되어 충청북도와 삼성꿈장학재단의 재원을 바탕으로 성화동에 성화청개구리와 성화꿈터 2개의 도서관이 만들어짐.

- 2010년 함께일하는재단 주관하에 시작된 LH국민임대주택단지 '마을형사회적기업지원사업'에 선정이 되어 사업을 진행하면서 마을단위에서 주민들이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의 지원을 받아 지역의 각종 자원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시작됨.

- 그 중심은 '함께사는우리'<sup>31)</sup>로 성화동 지역을 중심으로 '문화공간 들꽃' '깨끗꼬치', '도시생태농업단 거북이'등의 사업을 펼쳐 국민임대주택단지 주민들의 고용창출과 자기개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기 활동을 전개함.

- '함께사는우리' 조직과 함께했던 일부 주민활동가들은 그 역량을 파레트작은도서관으로 집중하여 주민재능기부자를 발굴하여 다양한 주민동아리를 양성함.

- '함께사는우리'는 국민임대주택단지 뿐 만 아니라 성화동 전체를 중심으로 한 마을공동체 운동을 펼쳐 주민센터와 연계하여 마을자원조사사업, 마을축제, 반찬배달서비스 등을 전개하였고 2013년 성화초등학교 옆에 고급빌라단지가 조성되면서 각 세대마다 불법으로 주차장을 중축해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일어나자 '스쿨존지킴이운동본부'를 결성하여 사회적 이슈문제에 적극 대응하기도 하였음 이러한 활동들은 도서관 강좌나 주민동아리 활동으로 소극적 참여자였던 주민들이 자신과 가정을 넘어서 지역사회에 참여해야 마을이 바뀔 수 있다는 긍정적인 관점의 전환을 경험하게 되는 계기가 됨.

- 푸른숲도서관(가경4단지)과 숨바꼭질작은도서관(성화2단지)은 관리사무소와 함께사는우리, 일부 지역주민들의 힘을 모아 개관하였으나 도서관을 운영할 만한 주민조직도 형성되지 못하

30) 사회적협동조합 일하는사람들은 청주지역 국민임대단지를 중심으로 마을만들기 교육실천을 전개하는단체로 지역아동센터, 작은도서관, 성인한글학교 공동부엌 등 교육, 문화, 복지의 각 영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음.

31) 함께사는우리는 LH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의 프로젝트 팀으로 시작하여 성화동 임대아파트 마을만들기 활동을 주로 하다가 따로 성화5단지 파레트 도서관 중심으로 조직을 분리함.

고 외부 단체의 운영지원도 받지 못하면서 도서관 활동의 구심점을 찾지 못하여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관리사무소의 관리로 일정시간 문을 열고 닫는 수준의 운영 모습을 보이고 있음.

#### □ 울량, 오송지구 (2014년~)

- 2014년 청주 울량동과 주중동 일대의 택지개발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울량2지구 LH1단지, LH2단지, LH9단지 국민임대주택단지가 입주하였음.

- 가정동과 성화동에서 '사회적협동조합 일하는사람들'의 마을공동체 사업과정의 성과가 인정되어 LH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이끌어내어 LH1단지에는 (사협)일하는사람들 사무국과 작은도서관, LH2단지에는 지역아동센터와 도서관, LH9단지에는 지역아동센터를 개소함.

- '일하는사람들'은 작은도서관을 활용한 마을사랑방활동, 주민축제, 마을영화제, 요가교실, 우쿨렐레, 캘리그라피 등 취미, 교양프로그램을 진행함. 특히 한글학교를 옮겨오고 상근활동가가 직접 일본어동아리를 진행하면서 울량지구는 30-40대 주부들이 주로 참여하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55세 이상 성인학습자들이 적극 참여하는 색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함. 이는 국민임대주택 단지에 노인세대의 비율이 늘어나면서 경제적, 사회적으로 이중으로 소외된 국민임대주택단지의 노인세대들을 마을의 구성원의 일원으로 확장시켜나가는 데 의미가 있음.

- 울량2지구 LH9단지 참도깨비도서관은 청주시에서 초창기부터 작은도서관 활동을 해왔던 시인활동가가 (사협)일하는사람들과 결합하면서 국민임대주택단지의 도서관 공간에 재개관함. 기존의 마을공동체 중심공간으로 취미, 교양프로그램 위주로 진행되었던 국민임대주택단지 작은도서관에 도서관 고유의 독서문화 활성화를 키울 수 있는 특화된 도서관으로의 기대를 모으고 있음.

- 청원 오송휴먼시아1단지의 도래샘도서관은 오송종합사회복지관, KTX오송역, 교회 등의 지역기관들이 힘을 모아 2016년 개관하였고 현재 교회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음.

#### · 청주시 국민임대주택단지 작은도서관 현황

▶ 청주시에는 <표 12>와 같이 13개의 국민임대주택단지가 있으며 대체적으로 사회적협동조합 형태의 단체에서 위탁운영함.

▶ 위탁운영 단체는 국민임대주택단지의 작은도서관의 공간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작은도서관을 지역아동센터 활동가가 함께 운영하거나 주민이나 도서관전문활동가에 의해 무급으로 운영함.

<표 12>청주시 국민임대주택단지 작은도서관 현황(2016년 기준)

	단지명	소재지	세대수	입주일	관리주체	도서관	도서관운영주체
1	가경1단지	가경동	581	2002년8월	주택관리공단	X	-
2	가경6단지		855	2004년4월	주택관리공단	X	-
3	가로수마을		773	2008년7월	거창	가로수마을	사협)일사
4	가경4단지	죽림동	814	2005년1월	주택관리공단	푸른숲	관리사무소
5	성화1단지	성화동	650	2007년6월	주택관리공단	성화청개구리	사협)일사
6	성화2단지		1215	2007년6월	주택관리공단	숨바꼭질	관리사무소
7	성화4단지		861	2010년10월	부건피앤피	성화꿈터	사협)일사
8	성화5단지		745	2010년12월	부건피앤피	파레트	함께사는우리
9	울량1단지	주중동	553	2013년10월	거창	나도밤나무	사협)일사
10	울량2단지		1099	2013년11월	세영	노리울	사협)일사
11	울량9단지	울량동	1122	2014년11월	부건피앤피	참도깨비	사협)일사
12	내수주공	내수읍	409	2007년11월	세영	X	-
13	오송휴먼시아	오송읍	1118	2008년9월	주택관리공단	도래샘	교회



## 제 4장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관련법령 및 정책간담회 분석

### 제1절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관련법령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의 운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 1. 운영 및 관리

##### □ 관리규약

· 각 공동주택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운영됨.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는 "관리규약"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18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으로 정의함.

· 관리규약을 토대로 하여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을 포함한 주민공동시설들의 운영방안이 결정됨.

##### □ 입주자대표회의

· 공동주택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들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과정을 통해 결정됨. 그에 따른 법적 근거는 아래와 같음.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는 "입주자대표회의"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로 정의함.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을 관리규약, 관리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은 <표 13>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과정을 정함.

<표 13>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② 법 제14조제8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제안서에는 개정안의 취지, 내용, 제안유효기간 및 제안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3.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
4.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5.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의 결정
- 6.~12. 중략
13. 주민공동시설(어린이집은 제외한다. 이하 제19조, 제23조, 제25조, 제29조 및 제29조의2에서 같다) 위탁 운영의 제안
- 13의2. 제29조의2에 따른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들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에 대한 허용 제안
14.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5. 입주자들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16.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 관리주체

·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치관리와 위탁관리로 크게 나누어지며 통상적으로 위탁관리의 형태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 관리사무소장 및 직원을 구성하여 관리사무소를 운영하게 됨.

· 「공동주택관리법」제2조는 관리주체를 <표 14>와 같이 정의함.

<표 14> 관리주체의 관리영역

「공동주택관리법」제2조는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로 정의함.

- 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 나.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 다. 주택관리업자
- 라. 임대사업자
- 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시설물 유지·보수·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관리주체의 역할

▶ 「공동주택관리법」제3조(국가 등의 의무)②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함.

▶ 「공동주택관리법」제9조(공동주택관리기구)①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관리 등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기구(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포함한다)를 구성하여야 함.

·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 보수, 관리의 책임이 있고 공동주택단지 내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작은도서관은 관리대상에 포함됨.

## □ 작은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 주체

·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비·청소·소독 및 쓰레기 수거,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적립 및 관리,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임.

· 따라서 주민공동시설은 관리주체가 운영·관리하여야 하는 것임.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주민공동시설을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음.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방법 또는 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함.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관리주체가 주민공동시설을 위탁하고자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해당 위탁 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 따라서 상기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관리주체가 선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주민공동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위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해당 주민공동시설을 운영하게 하고 이에 따른 비용 등을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함.<sup>32)</sup>

· 주민공동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를 자원봉사자 및 일정금액의 봉사 실비지급을 하는 실무자 등에게 위탁 및 지급하는 것은 규정과 절차에 맞지 않다고 해석함.

· 관리주체가 채용(고용계약)하여 관리·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민공동시설에 대해 관리주체가 직접 관리·운영하는 경우에 해당됨.

## 2. 이용자 범위

### □ 공공도서관의 범주 내 작은도서관

· 작은도서관은 누구에게나 개방하는 공공성의 개념이 강함.

· 「도서관법」 제2조4항 가목에 따라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포함됨.

32) 국토교통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myapt.molit.go.kr>> (2017.10.12.) 자원봉사자(유급,무급)를 통한 작은도서관 운영이 위탁운영에 속하는지에 대한 답변 2017.10.23.(답변일)

▶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공중의 정보이용·독서활동·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이하 "공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 또는 법인(「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단체 및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이하 "사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sup>33)</sup>

- "공중"이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백과사전에 따르면 "사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사람들, '일반 사람들', '일반인'으로 순화."<sup>34)</sup>를 뜻함.

▶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1조(목적)에서 '국민' 언급됨. 동법 제6조 (작은도서관의 운영방향)에서 '주민' 언급됨.

## □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의 법률적 이용자 범위

- 공동주택단지 내 주민공동시설로서 작은도서관은 복리시설에 해당
- 복리시설은 '입주민등'을 위한 편의시설로 자격을 제한함.
- 복리시설은 <표15><sup>35)</sup>과 같이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임.

<표 15> 공동주택과 복리시설의 정의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는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로 정의함.  
 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나.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다. 주택관리업자  
 라. 임대사업자  
 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시설물 유지·보수·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입주자 등은 <표 16>에서와 같이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하며 여기서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하며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 등을 말함.<sup>36)</sup>

<표 16> 공동주택관리법의 입주자등의 정의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8.28 제13499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15.12.29 제13687호(주택법), 2016.1.19 제13805호(주택법), 2017.4.18]  
 1. - 4. <생략>  
 5.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말한다.  
 6.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한다.  
 7. "입주자등"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33) 「도서관법」 [시행 2016.8.4.] [법률 제13960호, 2016.2.3., 일부개정]

34) 국립국어원 <<http://stdweb2.korean.go.kr>>

35)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17.10.19.] [법률 제14793호, 2017.4.18., 일부개정]

36)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17.10.19.] [법률 제14793호, 2017.4.18., 일부개정]

- 「주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은 제7조 복리시설의 범위를 <표 17><sup>37)</sup>과 같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으로 정함.

<표 17> 주택법 시행령의 작은도서관

주택법 시행령 제7조 (복리시설의 범위)  
 법 제2조 제1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 4. <중략>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6. - 11. <중략>  
 12. 주민공동시설  
 13. - 14. <생략>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에서 <표 18><sup>38)</sup>과 같이 “주민공동시설”이란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마목에서 도서실(정보문화시설과 「도서관법」 제2조제4호 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포함한다)을 명시함.

<표 1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내 작은도서관의 법적 위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 "주민공동시설"이란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경로당  
 나. 어린이놀이터  
 다. 어린이집  
 라. 주민운동시설  
 마. 도서실(정보문화시설과 「도서관법」 제2조제 4호 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포함한다)  
 바. 주민교육시설(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의 거주자를 위한 교육장소를 말한다)  
 사. 청소년 수련시설  
 아. 주민휴게시설  
 자. 독서실  
 차. - 하. <생략>

##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주민공동시설 이용관련 개정

· 주민공동시설의 이용대상 확대하는 법령 개정

- 국토교통부는 <표 19><sup>39)</sup>의 법령 개정의 배경으로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은 지금까지 보안, 방법, 정온한 주거환경 저해, 입주민의 이용을 방해할 수 있어 해당 공동주택 거주자만 이용토

37)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7.10.17.] [대통령령 제28374호, 2017.10.17., 일부개정]

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7.10.17.] [대통령령 제28373호, 2017.10.17., 일부개정]

39)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7.10.19.] [대통령령 제28350호, 2017.9.29., 일부개정]

록 제한되어왔다.”고 밝히며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고 이용자 부족과 운영비용 부족, 주민공동시설의 비활성화 문제를 해소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인근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도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2017년 1월 10일에 개정한다고 밝힘.<sup>40)</sup>

-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의 허용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제안하고 과반의 범위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함.

<표 19>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주민공동시설 이용관련 개정내용

<p>제29조의2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의 허용)</p> <p>①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주민공동시설을 운영해서는 아니 된다.</p> <p>②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관리주체가 허용 여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 중 건설임대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안하고 과반의 범위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을 것</p> <p>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p> <p>나.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의 요청</p> <p>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안하고 과반의 범위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임차인의 동의를 받을 것</p> <p>가. 임대사업자의 요청</p> <p>나. 임차인 10분의 1 이상의 요청</p> <p>3.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안하고 과반의 범위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을 것</p> <p>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p> <p>나.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의 요청 [본조신설 2017.1.10]</p>
---

### 3. 재정

#### □ 도서관의 자원 마련 기준

- 「도서관법」 제33조(사용료 등)
- ▶ 공공도서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자에게서 사용료 등을 받을 수 있음.
- 「도서관법 시행령」 제19조(공공도서관의 사용료 등) 법 제33조에 따라 공공도서관이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용료 등의 범위.

40) 연합뉴스. <[http://prlink.yonhapnews.co.kr/view.aspx?contents\\_id=RPR20161012016800353](http://prlink.yonhapnews.co.kr/view.aspx?contents_id=RPR20161012016800353)>

- ▶ 1. 도서관자료 복제 및 데이터베이스 이용 수수료
- ▶ 2. 개인연구실·회의실 등 사용료
- ▶ 3. 회원증 발급 수수료
- ▶ 4. 강습·교육 수수료
- ▶ 5. 도서관 입장료(사립 공공도서관의 경우에 한한다)

## □ 작은도서관의 기부금품 모집 근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기부금품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를 정착시키며,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함.<sup>41)</sup>

· 「도서관법」은 ‘금전 등의 기부에 관하여 누구든지 도서관의 설립·시설·도서관자료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을 도서관에 기부할 수 있다.’<sup>42)</sup>고 <표 20>과 같이 명시함.

<표 20> 「도서관법」 금전 등의 기부에 관한 근거

### 제9조 (금전 등의 기부)

- ① 누구든지 도서관의 설립·시설·도서관자료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을 도서관에 기부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2011.4.5][[시행일 2011.7.6]]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가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할 수 있다.[신설 2011.4.5][[시행일 2011.7.6]]

· 「법인세법시행규칙」제18조제1항 관련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과 관련하여 별표 6의2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도서관법」에 의하여 등록하거나 신고된 도서관 또는 작은도서관으로 <표 21><sup>43)</sup>와 같이 명시함.

<표 21>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별표 6의2] <개정 2016. 11. 2.>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제18조제1항 관련)

1-16. <생략>

17 「도서관법」에 의하여 등록하거나 신고된 도서관 또는 작은도서관

18-99. <생략>

4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42) 「도서관법」 [시행 2016.8.4.] [법률 제13960호, 2016.2.3., 일부개정]

43) 「법인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7.4.28.] [기획재정부령 제620호, 2017.4.28., 일부개정]

## □ 공동주택 회계처리 처리기준

- 공동주택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될 수 없음.<sup>44)</sup>
-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에 의해 주민공동시설의 수입은 관리외수익, 즉 잡수입으로 회계 처리됨.
  - ▶ 주민공동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지 않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작은도서관의 운영주체이며 주택관리업자 즉, 관리사무소가 관리주체임.
  - ▶ 작은도서관의 사용료와 강습료는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되며 관리외수익<sup>45)</sup>의 항목으로 관리사무소에서 회계 처리함.

## □ 작은도서관의 자생단체화 현상

- 「충청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1장 제3조 7항에 따르면 “자생단체”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법정단체 이외의 단체로서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 ○○봉사회, ○○회를 말한다.고 규정하며 이는 각 시도별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공통된 정의로 봄.
- 작은도서관은 시설이며 자생단체가 되기 위해서 「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 구성 및 활동지원」에 근거 한 구성 및 신고가 선행되어야 함.
- 작은도서관의 운영비 마련을 위한 한 방법으로 자생단체로 구성 및 신고하여 사업비를 지원 받는 경우가 있음.
- 자생단체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에 사업비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안전으로 처리시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약으로 인해 자생단체 등록을 통해 운영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그러나 자생단체의 경우 소요비용의 지원의 규정이 제한되어 있어 안정적으로 지속하여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음.
- <표22><sup>46)</sup>과 같이 잡수입의 100분의 40 범위내에서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등에 따라 지원되며 1개 자생단체의 지원한도액은 자생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총예산액을 지원 대상 자생단체수로 나눈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함.
-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도 도서관법을 적용받는 공공도서관으로서 공중의 독서문화 증

44) 「주택법 시행령」 별표 3 용도변경 중 신고기준에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설로만 허용(애초에 복리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간접적으로 밝힘) 이러한 관련규정 등을 감안, 대법원에서 주민공동시설은 영리로 운영해서는 안된다고 판시(대법원 2007도376, 대법원 2009도9214)

45) 관리수익은 영 제23조제1항의 관리비, 같은 조 제2항의 장기수선충당금, 같은 조 제3항의 사용료 등에 대한 고지를 통하여 입주자등에게 부과한 수익으로 한다. 관리외수익은 관리수익 외에 관리주체에게 유입되는 수익으로, 복리시설의 운영, 자치활동 등을 통하여 발생하는 수익과 경상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익 등을 말한다.

46) 충청북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제11차 개정), 2017.3.10. 확정



진을 위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갖추어야 할 도서의 구입과 관리자의 고용이 필요함

· 대부분의 자생단체의 형태는 취미가 동일한 동호회 형태 또는 비슷한 연령대의 모임인 부녀회 및 노인회 등으로 일시적인 행사 지원 또는 특정세대를 위한 활성화 활동을 위한 비용을 지원 받는 형태와는 차별됨.

<표 22> 충청북도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자생단체 소요비용 지원

제41조【소요비용의 지원】①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체 활성화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제65조의 규정에 따른 잡수입의 100분의 40 범위내에서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등에 따라 매월 또는 분기나 반기별로 사업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1개 자생단체의 지원한도액은 자생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총예산액을 지원 대상 자생단체수로 나눈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비용 지원을 받는 공동체 활성화단체는 매월 또는 분기나 반기별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비용을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확인하여 지원비용을 유용하거나 목적 외 사용한 것으로 판명되는 등의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하며, 자생단체는 이에 대한 비용을 반납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를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자생단체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완료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집행된 지원비용을 정산하고 그 잔액은 반납하여야 한다.

## □ 공동주택회계처리지침이 작은도서관 운영에 미치는 문제점

· 현재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회계처리지침<sup>47)</sup>에 따르면 주민공동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관하여 아파트의 관리외수익, 잡수입으로 처리됨.

· 공동주택의 잡수입은 당해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규정한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제1항<sup>48)</sup>),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편성해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sup>49)</sup>), 또는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제16호<sup>50)</sup>)에 한해 사용할 수 있음.

· 작은도서관의 운영시 발생하는 수입이 작은도서관의 운영에 지원되지 않고 아파트의 수입으

47) 권우상 외5,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해설서」 (한국감정원, 2016)

48)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관리규약 등의 신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관리규약의 제정의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변경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9)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로부터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받은 관리주체는 지체 없이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수립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③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50)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①생략. ② 법 제14조제8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5생략. 16.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로 편입된 후 사업계획서 승인 또는 예산안심의 등의 입주자대표회의의 지급여부 및 지원규모에 대한 의결 과정에 따라 관리외비용<sup>51)</sup>으로 지급되거나 그렇지 않게 됨. 즉,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라 도서관법에 따른 작은도서관의 수입이 작은도서관 운영에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음.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별대표자의 임기는 2년이며 한 번만 중임할 수 있어 구성원이 변경될 때마다 동별대표자의 성향에 따라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여부 및 규모가 변하여 안정적인 운영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음.

## □ 도서관법과 학원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는 <표 23>과 같이 학원에 대한 정의와 함께 제외되는 각 목의 시설을 소개함.<sup>52)</sup>

▶ 해당 각 목중 나목에 따라 도서관은 학원 및 교습소에게 요구되는 제한적인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 아파트 내 공동시설에서 학원으로 신고하지 않고 교습행위가 이루어졌을 경우의 위법임.

▶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에 의해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포함되어 ‘도서관’이라는 기관임을 인식 필요.

<표 2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8, 2011.7.25, 2016.1.19 제13805호(주택법)] [[시행일 2016.8.12]]

1.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

나. 도서관·박물관 및 과학관

다.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라.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마.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

바.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사.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51) 관리외비용은 입주자들에게 부과하지 않는 비용으로, 주로 복리시설의 운영, 자치활동 등을 통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5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약칭: 학원법) [시행 2017.3.21.] [법률 제14403호, 2016.12.20., 일부개정]

## 4. 시설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설치기준

· 작은도서관의 설치 기준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1

▶ <표 24><sup>53)</sup>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에 따르면 공통기준으로 소방시설의 설치,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부착, 개별기준으로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을 제외한 건물면적 33제곱미터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도서관자료 1,000권 이상으로 정함.

- 시설의 면적과 열람석수, 장서규모만 정하고 있을 뿐 사용 목적에 따른 공간구성이나 주이용자를 고려한 시설의 위치 및 환경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표 25><sup>54)</sup>과 같이 공동주택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중 어린이집과 경로당 설치 기준과 비교하였을 때 그 구체성과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이용할 수 있는 이용대상자를 고려하지 않은 작은도서관의 설치기준임을 알 수 있으며 공간배치 및 구체적인 설치시 의무사항들이 상대적으로 미흡하게 마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24>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1 시설 및 자료의 기준

작은도서관		
도서관법 시행령[별표1] <개정 2016. 7. 26.>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제3조제1항 관련)		
1. 공통기준		
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부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도서관으로 한정한다)		
비고: 건물면적에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개별기준		
가. 공공도서관		
3) 작은도서관		
시설		도서관자료
건물면적	열람석	
33제곱미터 이상	6석 이상	
		1,000권 이상

· 주민공동시설 내 어린이집 설치기준

- 어린이집과 경로당은 1층에 위치하며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독서실 등의 경우 지하 또는 2층 이상의 위치에 설치되고 있음.

-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설치기준이 6페이지의 분량으로 어린이집

53) 「도서관법 시행령」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

54) 박민주,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 (석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 일반대학원. 2017), 74.

의 입지조건, 규모, 구조 및 설비기준, 위치와 면적, 환경상태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됨.

- 보육실은 건축법령상의 층수와 관계없이 해당 층 4면의 100분의 80 이상이 지상에 노출되어 있고, 해당 층 주 출입구의 하단이 지표면부터 1미터 이내인 층(이하 “1층”이라 한다)에 설치하여야 하며 영유아 1명당 2.64제곱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 및 환기·채광·조명·온도 및 습도가 적절히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sup>55)</sup> 되어있음.

· 주민공동시설 내 경로당 설치기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설치기준에 “일조 및 채광이 양호한 위치에 설치할 것, 오락·취미활동·작업 등을 위한 공용의 다목적실과 남녀가 따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것, 급수시설·취사시설·화장실 및 부속정원을 설치할 것” 등을 기준으로 제시함.

- 노인복지법 제37조 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함. 위치, 공간 구성, 필수 편의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함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의 보급까지 법으로 정하고 있음.

<표 25> 공동주택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설치기준 주요내용 비교

구분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1. 경로당 가. 일조 및 채광이 양호한 위치에 설치할 것 나. 오락·취미활동·작업 등을 위한 공용의 다목적실과 남녀가 따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것 다. 급수시설·취사시설·화장실 및 부속정원을 설치할 것	3. 어린이집 가. 「영유아보육법」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나.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 시가지 설치할 것	5.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가목 3)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주요내용	노인복지법 법률 제14596호 일부개정 2017. 03. 14. 제37조 (老人餘暇福祉施設의 設置) ①-②생략.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1.6.7][시행일 2011.12.8] ④老人餘暇福祉施設의 施設, 人力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設置申告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 주요내용 요약 어린이집의 입지조건, 어린이집의 규모,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서 위치와 면적, 환경 등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보육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놀이터, 급배수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 폐쇄회로 텔레비전)	도서관법 시행령[별표1] <개정 2016. 7. 26.>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 자료의 기준(제3조제1항 관련) 1. 공통기준 -생략- 2. 개별기준 가. 공공도서관 3) 작은도서관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시설</th> <th rowspan="2">도서관 자료</th> </tr> <tr> <th>건물 면적</th> <th>열람석</th> </tr> </thead> <tbody> <tr> <td>33제곱미터 이상</td> <td>6석 이상</td> <td>1,000권 이상</td> </tr> </tbody> </table>	시설		도서관 자료	건물 면적	열람석	33제곱미터 이상	6석 이상	1,000권 이상
시설		도서관 자료									
건물 면적	열람석										
33제곱미터 이상	6석 이상	1,000권 이상									

55)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시행 2017.6.20.] [대통령령 제28132호, 2017.6.20., 일부개정]

## 제2절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정책간담회 분석

### 1. 정책간담회 개요

▶ 목적 :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정책제안 마련.

▶ 방법 : 발제 및 토론

▶ 기대효과 :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관련 종사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장에서 바라보는 작은도서관의 모습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여러 목소리를 취합하고 현장의 입장차이를 확인하며 객관적인 관점으로 정책제안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참석자 : 관리사무소장 2인, 전)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겸 도서관장,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청주시청 공동주택관리과, 청주시립도서관 작은도서관 담당자,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위탁운영 실무자,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운영자, 청주시 지역별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대표 오창1인, 오송1인, 자문 변호사, 시의원2인.

### 2. 제도적 기반에 관한 의견

·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의 이용자 범위, 운영과 재정의 지원에 관한 의무조항, 회계처리 지침, 시설 면적, 공간구성, 접근성 등에 관한 의견.

▶ 운영규정 및 회계처리지침

-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에 의해 공공도서관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공동주택관리법 상으로는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공동시설이기 때문에 통제를 받음. 상반된 개념으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음.

-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는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후원금 또는 이용료 등을 잡수입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음. 잡수입으로 볼 경우 아파트 회계에 귀속되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해서 사용되어야 함. 자율적인 도서관의 운영을 위해서는 작은도서관 운영시 발생하는 수입의 경우 작은도서관이 우선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거나 보조적인 규정이 있어야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음. 입주민에게 설명 후 동의 절차를 거쳐 관리규약에 반영하는 것이 좋겠음. 규약에 후원금의 경우 사용처에 대해 명확히 하여 운영하는 것이 좋음.

- 충청북도관리규약준칙에 관련사항들을 명시해 놓는다면 아파트에 제시할 수 있으나 현재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입주민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설득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음.

- 도서관법이든 공동주택관리법이든 조항을 만들어서 작은도서관이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합의점을 찾아야 하나 현재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아 분쟁이 발생되고 있음. 공동체활성화라는 부분에서 그러한 점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함.

- 도서관의 운영을 위한 도서관법이 보장한 사용료, 이용료, 또한 지정기부금단체로서 모집이

가능한 기부금품, 후원금등이 공동주택회계처리지침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의 관리외수익(잡수입)으로 입주자대표회의로 구분되는 불합리함은 공공성을 지닌 작은도서관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다른 주민공동시설들과 다르지 않게 생각하는데서 충돌이 비롯됨.

- 도서관운영으로 발생된 잡수입이나 기부금 같은 목적을 지정한 기부금의 경우 해당 목적에만 사용하고 다른 곳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것 같으니 사용용도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입주자대표회의는 재정 안에서 작은도서관에 일정 비율을 사용해야한다는 규정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며 기부금도 목적성 기부금을 그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규정을 법에 명시하여야 함.

### ▶ 현장의 현실과 방안 제시

- 오창의 8개 공동주택 단지 내 작은도서관 중 입주자대표회의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현재 6개 단지만 운영됨. 6개 단지 내 작은도서관의 문제들은 항상 비슷함.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관계가 원활한 곳은 운영이 쉽고 그렇지 못한 곳은 지원이 없어 운영이 어려움. 운영을 위해 바자회 등을 통해 자구책을 마련하기도 함. 봉사기간 6년 동안 입주자대표회장이 3번 바뀌어 입주자대표회장의 마인드에 따라 좌지우지됨. 설치에 대한 의무조항 외 운영시간, 지원의 정도 등 구체적인 운영 관련 법조항이 필요함.

- A도서관은 자생단체로 등록됨. 자생단체일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서임. 반면에 자생단체이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제재를 많이 받음. 자생단체로 등록하지 않는 방법도 있으나 지원금이 끊기면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자생단체로 등록하여 운영중임. 또한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관계 속에 관장의 역할이 과도하게 요구되어 부담으로 인해 관장을 기피하는 현상 발생됨.

- 소수의 헌신하는 봉사자가 있는 경우 운영이 잘되고 그렇지 못한 곳은 잘 안되기도 함.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지가 좌우함. 열정이 식더라도 작은도서관이 운영이 되어가는 시스템, 열정과 시스템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함.

- 작은도서관진흥법에 작은도서관을 활성화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으나 법적인 의무는 아님. 하지 않아도 제재가 없어 작은도서관의 자율성은 인정하지만 한편으로 무관심으로 방치되게 함. 그래서 시행령이나 조례, 예로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나 청주시 조례를 통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소장에게 작은도서관 현황을 분기별 보고의 의무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스스로 현황, 여건, 수입, 지출 등을 조사하다보면 발전이 없는 것에 스스로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음. 매년 시에서 이것을 기준으로 평가 후 피드백이 필요함.

- 두 번째로 500세대이상 공동주택 작은도서관을 협의회에서 평가하여 공시, 스스로 활성화 되도록 자극제 역할을 해주는 방법도 필요함. 지역구 의원의 평가에도 해당지역의 작은도서관 활성화 여부에 따라 수치화 되어 공시를 하면 지역구 의원의 관심이 확대될 것임. 결론적으로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적절한 압박으로 스스로 잘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필요함.

### ▶ 관련법(공공성과 외부주민 이용불가)

-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평가시 지표에 외부주민에게 공개하는 항목이 있음.

그러나 실제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 주민동의 절차를 거쳐야 가능함을 지적하며 지금까지 외부주민에게 공개해오던 도서관들이 충돌이 발생하게 됨.

- 또한 공동주택단지 내 여러 단체 및 시설에서 유료로 운영되는 각종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에 비교해볼 때 작은도서관의 여러 프로그램을 상품화하여 수익을 남기려는 움직임들이 우려됨. 공공도서관이 가지는 공익의 원칙,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기본원칙이 충돌됨. 설치의 강제 조항만이 아니라 운영의 강제조항이 일부라도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규약에 포함될 수 있게 하는 것과 더 이상 공동주택단지 내에 작은도서관을 조성하는 것을 강제조항으로 넣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특정 세대의 수가 아닌 도서관 발전계획에 따라 어떤 지역에 어떻게 조성해야 하는지 계획사항을 의무적으로 만드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외부주민에 대한 주민공동시설 이용을 위한 절차가 명시화 됨. 작은도서관을 어린이집과 같이 주민공동시설과 같은 관리 규정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개의 기관으로 예외조항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기본적으로 공동주택단지 주민의 권리는 인정하면서 담을 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음. 청원군민과 청주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구별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도서관 간에도 서로 대출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을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이 적절하지 않게 보일 수도 있음.

-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해야함. 하고자 하는데 법 때문에 마찰이 생기는 부분은 개선되어야 함.

#### ▶ 기타 관련법

- 고령화시대에 노인 인구를 위한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을 법조항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입주자대표 의무교육시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한 공동체활성화 교육이 필요함.

### 3. 운영주체에 관한 의견

#### □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운영주체 사례

▶ 김해시의 경우 자치단체가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약하여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공간을 무상으로 임대 받아 사업자등록을 한 도서관운영위원회를 통해 자치단체의 지원 아래 운영됨.

- 운영의 안정성이 보장되고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장점과 동시에 자발성과 주체성이 부족하여 마을의 공동체 공간, 주민의 자발적 조직 등에서 부족한 단점이 나타남.

-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이 증가되면서 전체 작은도서관의 지원에 한계가 발생되어 평가를 통한 일부 단지의 지원으로 방법이 전화되며 현행 방법에 대한 지속을 요구하는 갈등이 발생됨.

-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의 운영의 책임을 공공의 영역에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여 지원에 대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자발적인 운영의 의지나 투자가 저조하게 만드는 현상도 나타남.

## □ 청주시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운영주체 현황

### ·오창지역

▶ 현재 운영중인 8개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경우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운영주체로 청주시에 등록되어 있음.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간 네트워크를 통해 작은도서관의 운영과 재정 관련 정보를 공유함. 그러나 정보공유가 지원 수준을 하향평준화 하는 역효과를 낳고 있음.

### ·산남3지구

▶ 8개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의 운영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로 청주시에 등록되어 있음.

▶ 오창지역과는 달리 주민들의 작은도서관에 대한 좋은 인식과 참여를 통해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 요구가 많음.

▶ 작은도서관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며 운영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하는 분위기임.

### ·국민임대주택단지

▶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아 주민 자원봉사 조직이 없음.

▶ 외부 시민단체가 공간을 임대하여 운영주체로 운영하고 있음.

▶ 관리소에서 관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개신글마루작은도서관<sup>56)</sup>

▶ 관리규약으로 운영주체를 입주자대표회의로 분명히 명시하고 책임성을 분명히 함.

▶ 실제적인 재원이나 사업계획, 전문사서 배치, 예산편성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책임을 지는 형태임.

## □ 법령 개정을 통한 운영주체 명시 필요

- 개신글마루작은도서관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내에 운영주체를 입주자대표회의로 하고 그 내의 관리규약을 정할 때 관리규약 내에 위원회를 설치함.

- 자생단체가 아닌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특별위원회로 정해서 규약에 입주자대표회의는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운영해야한다 명시하고 그 앞에 당연직 운영위원장을 입주자대표회장이 하는 것으로 정리함.

56) 개신주공1단지아파트내에 자리한 작은도서관으로써 청주시 작은도서관 중 대표적인 모범운영도서관으로 사서인을 고용계약을 통해 채용하여 상근직을 두어 운영함.



- 이러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책임성이 규약으로 보장되어 이 기관에 대해 통제나 관리를 합법적으로 진행 할 수 있음.
- 공동주택법 내 관리규약 속에 작은도서관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책임성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다른 공동주택 관리규약들도 표준관리규약으로 바꾸어야함.
-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공주택 내 작은도서관에 대한 좋은 모델을 발굴하여 정량적인 평가와 더불어 정성적인 평가를 반영하여 작은도서관이 입주자대표회의 속에서의 위치한 구조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책임성이 분명히 구현되는 도서관에 지원을 하여 다른 도서관의 모범이 되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함.

# 제 5장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 제1절 제도적 기반 정비

### 1. 운영 및 관리 주체

#### □ 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로 명시 필요

- 법령의 운영주체의 명확성이 미흡함.
  - ▶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은 사립과 공립 모든 작은도서관 중 유일하게 법적 의무로 설립된다는 점의 중요성 인식 필요함.
  - ▶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의 관리주체와 운영주체의 역할과 의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법에 명시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함.
  - ▶ 현행법상 주민공동시설 운영에 관한 의결 권한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있으며 그 관리는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게 있으나 실제로 대다수의 작은도서관이 주민들로 구성된 자원활동가 형태로 운영 되고 있는 경우가 많음.
  - ▶ 작은도서관과 같이 운영의 전문성과 안정성이 요구되는 경우 운영주체를 법률에 명확히 하여 그 책임과 의무의 대상을 지정할 필요가 있음.
  - ▶ 작은도서관 운영을 둘러싼 공동주택단지 내에서의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이기도 함.
- 운영주체의 권한과 의무에 대한 명시
  - ▶ 조례를 통한 운영주체의 역할과 지원의 규모를 명시하여 권한과 책임을 갖도록 하며 의무를 이행하도록 해야 함.
  - 운영의 예외성 부여
    - ▶ 작은도서관은 법률에 명시된 공공도서관으로서 공공도서관의 목적인 공중의 정보이용·독서활동·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운영되어야 함.
    - ▶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은 공동주택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중 하나로 아파트 입주민 등이 지불하는 공동관리비로 운영 및 관리되는 재산적 가치를 지닌 공간임.
    - ▶ 도서관의 공공성과 주민공동시설의 공동재산권과의 상호 충돌되는 이용자범위 및 공익성의 기준에 대한 논의와 합의점 도출이 필요함.
    - ▶ 개념과 기준을 정리하고 법에 명시하여 현장의 갈등 요인들을 최소화해야 함.
    - ▶ 입주자대표회의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경우 관리의 대상이 되어 주체성과 자발성이 결여될 수 있어 독립성과 예외성의 범위를 법에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 공동주택의 재산권이 가지는 공공성의 한계 인식
    - ▶ 작은도서관은 법률에 명시된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포함됨.
    - ▶ 공동재산권과 관리운영의 주체가 입주민등으로 되어 있는 사립작은도서관에게 입주민 등의 부담 및 단지 외부의 개방을 법규로 강제화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

- ▶ 지자체 운영의 공립 공공도서관도 다른 지자체와의 경계 존재하는 현실임.
- ▶ ‘공공성’의 명분도 다의적 개념으로 쓰이고 있어 어려움 가중.

## □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집 운영 관련 법규

- 주민공동시설인 어린이집 운영의 예외성 참고 필요
- ▶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집은 작은도서관과 함께 주민공동시설에 포함됨.
- ▶ 공동주택의 어린이집은 주민공동시설에 속하지만 <표 26>과 같이 각종 예외사항을 두어 교육과 보육의 안정성을 보호하고 있음.
  -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관리규약) 2항의 관리규약을 정함에 있어서 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 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예외사항으로 두고 있음.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①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법 제14조제8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2. 생략. 13. 주민공동시설(어린이집은 제외한다. 이하 제19조, 제23조, 제25조, 제29조 및 제29조의2에서 같다) 위탁 운영의 제안
- ▶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집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의 기준은 「영유아보육법」 기준에 준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음. 즉 작은도서관의 경우 「도서관법」 「작은도서관 진흥법」 등이 기준법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표 26>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중 어린이집 관련 법령의 예외사항

<p>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①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② 법 제14조제8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lt;개정 2017.1.10.&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제안서에는 개정안의 취지, 내용, 제안유효기간 및 제안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li> <li>2.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li> <li>3.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li> <li>4.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li> <li>5.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의 결정</li> <li>6.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비 등의 회계감사 요구 및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li> <li>7.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비 등의 결산의 승인</li> <li>8. 단지 안의 전기·도로·상하수도·주차장·가스설비·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운영 기준</li> <li>9.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li> </ol>
---

- 10.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교체 및 개량
- 11.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행위허가 또는 신고 행위의 제안
- 12. 제3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담보책임 종료 확인
- 13. 주민공동시설(어린이집은 제외한다. 이하 제19조, 제23조, 제25조, 제29조 및 제29조의2에서 같다) **위탁 운영의 제안**
- 13의2. 제29조의2에 따른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들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에 대한 허용 제안
- 14.-17. 생략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이하 "관리규약준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들이 아닌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21.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계약(지방자치단체에 무상임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임차인 선정기준. 이 경우 그 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선정관리 기준에 준하여야 한다.**

- 가. 임차인의 신청자격
- 나. 임차인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
- 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들 중 어린이집 임대에 동의하여야 하는 비율
- 라. 임대료 및 임대기간
- 마. 그 밖에 어린이집의 적절한 임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0조(관리규약의 제정 등) ①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할 때 관리규약 제정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다만, 제29조의3에 따라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주개시일 3개월 전부터 관리규약 제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

제25조(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① 법 제25조에 따라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 개정 2017.1.10.>

- 1.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 지능형 홈네트워크, 수선·유지(냉방·난방시설의 청소를 포함한다)를 위한 용역 및 공사
- 나. 주민공동시설의 위탁, 물품의 구입과 매각, 잡수입의 취득(**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에 따른 잡수입의 취득은 제외한다), 보험계약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29조의3(사업주체의 어린이집 임대계약 체결)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어린이집 임대계약의 체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 어린이집 임대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 임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공고하고 입주예정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의 어린이집 임차인 선정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관리규약 중 제19조제1항제21호다목의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외되는 조항 : 제23조(관리비 등), 제29조(주민공동시설의 위탁 운영), 제29조의2(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들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의 허용)

## 2. 이용자 범위

### □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법안의 개정 필요

-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역할
  - ▶ 「도서관법」제2조(정의) 제4항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속하는<sup>57)</sup> 작은도서관의 공공성 보장 필요.
  - ▶ 주민공동시설의 외부주민의 이용에 관한 관리규약 적용의 예외사항 필요.
  - ▶ 이용자의 범위에 제한을 완화하여 지역의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할 필요 있음.
  -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작은도서관이 가져야 할 가장 큰 가치는 공공성임.
  - 하지만 현재 법령은 주민공동시설의 이용자범위를 해당 단지 내 주민으로 제한하며 타주민의 이용을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과 주민 동의를 절차로 요구하고 있음.
  - 이는 아파트와 작은도서관이 명백히 상반되는 가치를 지향함으로써 발생하는 법령의 충돌이라고 볼 수 있음.
  - 이러한 상호 모순되는 부분은 현장에서 작은도서관 운영자 및 자원활동가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관리사무소 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갈등을 야기시키는 요소로 작용됨.

## 3. 재정 및 지원

### □ 공동주택회계처리지침의 예외규정 필요

- 도서관법에 따른 운영수입 및 기부금품에 대한 목적성 보장
  - ▶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회계처리 지침 중 작은도서관 사용료 징수 근거가 되는 「도서관법」 및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등의 취지를 훼손하는 공동주택회계처리지침의 예외처리 또는 수정 필요.
  - ▶ 공동주택관리법에 작은도서관의 운영수입 및 기부금품에 대한 지출을 작은도서관으로 우선하도록 명시 필요.
  - ▶ 입주자대표회의의 성향 및 판단에 도서관의 재정지원이 불안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보완하여 작은도서관에 대한 운영수입은 목적성을 갖는 비용으로 판단하여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쓰일 수 있도록 지정하여 재정의 안정화 도모.
  - 작은도서관은 주민공동시설 중 공동주택관리법의 예외규정을 두어 관리외수익으로 포함되어 있는 회계구조에서 분리운영이 가능하게 해야 함.
  - 관리외수익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통장으로 입금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과정을 통해 관리외비용으로 지출되는 절차를 따름.

57) 「도서관법」 [시행 2016.8.4.] [법률 제13960호, 2016.2.3., 일부개정]

- 이 과정 속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해 작은도서관으로 지원 여부가 결정됨.
- 때문에 작은도서관이 지정기부금단체인 점과 도서관법에 의한 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징수 권한도 사실상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에게는 현실적으로 무의미한 제도임.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에 대한 회계처리 지침이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4. 설치기준 및 시설

##### □ 법령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 상향조정 필요

-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
  - ▶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자료의 기준 중 작은도서관 시설기준은 면적 33㎡ 이상, 열람석(좌석수) 6석 이상, 자료수 1,000권 이상으로 규정되어있음.<sup>58)</sup>
  - ▶ 이 기준은 시행된 후 단 한 차례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의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수와 비교해볼 때 그 기준이 매우 뒤쳐져있어 상향조정되어야 함.
  - ▶ 또한 무분별하게 증가되는 작은도서관을 억제시키고 내실 있는 작은도서관의 운영과 질적 성장을 위해 사립 작은도서관의 설치기준을 강화시켜야함.
- 시설의 물리적 접근성과 편의성에 대한 관련기준
  - ▶ 청주시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들의 층수를 살펴본 결과 지하 또는 2층 이상에 위치한 사례가 많고 더욱이 승강기가 없는 곳이 많음.
  - ▶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집과 경로당은 대부분 1층에 위치하는 것과 비교해볼 때 작은도서관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대상과 경로당을 이용하는 대상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1층 또는 계단의 제약을 받지 않는 시설을 보완하는 조건하에 설치되는 것이 합당함.
  - ▶ 작은도서관은 특정 세대에 국한되지 않고 영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층이 이용 대상임. 물리적인 접근에 대한 제약이 있어서는 안됨. 특히 장애인, 어린이, 임산부, 노약자 등은 원거리 도서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이용대상으로 작은도서관의 활용이 절실한 대상임.
  - ▶ 이러한 이용자들을 위해 작은도서관의 물리적 접근성과 편의성에 대한 국제적인 시설 기준 마련이 필요함.
  - ▶ 이는 국가에서 추구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이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독서문화 향상의 방법임.
- 시설의 공간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의무화
  - ▶ 공동주택단지 내 경로당과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은 ‘채광이 잘되는 곳’, ‘실내 화장실 구비’ 등 구체적으로 설치기준을 법에 명시하고 있음.

58) 「도서관법 시행령」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

▶ 작은도서관의 책 읽는 공간과 독서 및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공간의 구성 등 다양한 이용자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도록 공간에 대한 기준이 필요함.

▶ 교실과 함께 회의와 레크리에이션을 할 수 있는 좌식 형태의 공간이 마련된다면 영유아기 아이들의 프로그램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실제로 시립도서관 관계자는 북스타트 프로그램을 작은도서관에서 운영하기 위해 좌식 공간을 보유한 작은도서관을 찾기 위해 많은 시간을 들인 사례가 있음.

#### ·시설의 배치에 대한 고민 필요

▶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에는 여러 복리시설이 한 건물에 함께 배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작은도서관 설치시 어떠한 성격의 시설과 근접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이 뒷받침된다면 좀 더 효율적인 이용자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 예측됨.

▶ 작은도서관은 독서문화를 확대하고 문화프로그램을 통한 평생교육을 실현하는 곳임. 복리시설 중 어린이집과 경로당의 경우 작은도서관과 근접하다면 영유아를 위한 독서프로그램과 경로당의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용이하게 됨. 이는 영유아기의 독서습관을 기르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본격화 될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노인들을 위한 작은도서관의 역할을 확대하고 평생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음.

▶ 관리사무소의 경우 작은도서관과 인접할 경우 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용이하고 자원봉사자 부재시 관리를 대신 해줄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도서관과 독서실은 같은 성격이 아님. 독서실은 입시와 자격시험 등 공부에 집중하는 공간이나 도서관과 독서실을 같은 개념으로 인식하여 대부분의 작은도서관 옆에 독서실이 배치되는 경우가 많음.

▶ 도서관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때문에 소란할 수 있고 악기나 놀이교육의 경우 그 소음이 독서실 학습자들에게 방해를 주는 요인이 되므로 근접한 곳에 위치하는 것은 쌍방의 불편을 초래함.

▶ 도서관 내에서의 회의나 동아리활동, 프로그램운영, 이용자간 커뮤니케이션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독서실과 도서관은 떨어진 공간으로 배치하거나 벽을 사이에 두거나 인접한 경우 독서실의 방음처리가 필요함.

▶ 작은도서관을 설치시 이러한 점에 대해 건설사와 공유하고 대중에게 인식될 수 있도록 이산화하는 홍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시설의 정기적인 관리감독

▶ 주민공동시설은 설치 후 다양한 주민의 의견으로 인해 용도가 변경되는 사례가 많으며, 작은도서관의 경우 방치되는 사례가 많음.

▶ 현재의 작은도서관들의 시설이 그 용도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또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을 잘 준수하였는지 그 여부를 조사 및 관리감독 할 필요가 있음.

## 제2절 통계적 기반 구축

### 1. 통계적 기반 현황

#### □ 공공도서관 통계현황

· 「도서관법」 제2조(정의), 4항에 의해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작은도서관 포함됨

▶ 정부부처와 문헌정보학계에서 진행되는 공공도서관 관련 각종 연구와 통계조사 등의 대상에 작은도서관이 포함되고 있지 않음.

- 문화체육관광부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16년도('15년 실적)전국도서관 운영평가 지표'에 작은도서관은 포함되고 있지 않음

- 문화체육관광부 '2016년도 공공도서관통계조사 보고서'의 경우 전체 보고서 중 공공도서관의 도서관서비스 지원기관 현황 부분으로 작은도서관의 지원현황에 대한 일부분만 포함됨.

#### □ 부대복리시설 통계현황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2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설치의 의무화.

▶ 주민공동시설의 설치에 대한 의무규정은 세대수에 따라 150세대 이상의 경우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300세대 이상의 경우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을 500세대 이상의 경우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을 설치하도록 하였음

·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은 주민공동시설로 규정됨.

▶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의 부대복리시설 통계현황은 <그림 4>와 같이 작은도서관 현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sup>59)</sup>

- 국내통계-기관별통계-국토교통부-아파트주거환경통계 내 세대수에 따른 전국 공동주택 현황 통계가 없어 작은도서관의 의무설치 대상 단지수와 설치 및 운영 단지수의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움

- 국내통계-기관별통계-국토교통부-아파트주거환경통계-지역별 부대복리시설 현황의 경우 의무설치 대상 주민공동시설 중 작은도서관의 현황이 통계에 포함되지 않아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의 설치현황 파악이 어려움

59) 국가통계포털 사이트 <<http://kosis.kr>> (2017.09.12)



통계목록 지역별 부대 복리시설... × 사업주체별 부대복리... ×

지역별 부대 복리시설 현황(2007~2013) 통계설명자료 | 온라인간행물

출처 : 국토교통부, 아파트주거환경통계 [더보기]

자료경신일 : 2016-02-01 / 수록기간 : 년 2007 ~ 2013 / 자료문의처 : 044-201-9367

입괄설정 + 항목[10/10] 시도명[18/18] 레벨01[7/7] 시점[1/3] 통계표조회

(단위 : 개소, 호수) 새창보기 | 주석 | URL | 인쇄 | 공유 | 즐겨찾기 | 다운로드 | 도움말

시도명(1)	레벨01(1)	2013				
		준공 누계 호수	개소	개소당 호수	동	동수당 호수
계	준공 누계 호수	8,487,313	-	-	-	-
	어린이놀이터	-	33,414	254.0046386293	-	-
	휴게소	-	19,575	433.5792081737	-	-
	상가	-	-	-	21,131	401.6522171218
	노인정	-	15,032	564.6163517829	-	-
	유치원	-	3,748	2,264.49119530	-	-
	체육시설	-	-	732.4858030551	-	-
서울특별시	주요 누계 호수	1,882,460	-	-	-	-

<그림 4> 국가통계포털의 복리시설 현황 자료 화면

▶ 국가통계포털홈페이지 전국도서관 통계<그림 5><sup>60)</sup>

- 국내통계-기관별통계-문화체육관광부-전국도서관통계-작은도서관현황의 경우 심층적인 연구자료로 사용하기에 단순한 개요적인 현황만 나타남

국내통계 Home > 국내통계

통계목록 작은도서관현황 ×

작은도서관현황 통계설명자료 | 온라인간행물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전국도서관통계 [더보기]

자료경신일 : 2017-08-28 / 수록기간 : 년 2013 ~ 2016 / 자료문의처 : 044-203-2619

입괄설정 + 항목[6/6] 시설별[3/3] 시점[1/4] 통계표조회

새창보기 | URL | 인쇄 | 공유 | 즐겨찾기 | 다운로드 | 도움말

시설별(1)	2016					
	작은도서관 현황 (개)	1관당 장서 수(권)	전체 방문자 수 (명)	1관당 방문자 수 (명)	전체 대출도서 수 (권)	1관당 대출도서 수(권)
전체	5,914	6,028	34,094,234	5,765	20,623,311	3,487
공립	1,403	9,109	15,542,833	11,078	11,456,261	8,166
사립	4,511	5,070	18,551,401	4,112	9,167,050	2,032

<그림 5> 국가통계포털의 작은도서관현황 자료 화면

▶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sup>61)</sup>-작은도서관통계보기-통계결과표의 경우 설립주체를 공립과 사립으로 구분하여 자료를 구성하여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의 연구를 위한 관종별 자료 확보가 어려운 현실임.

▶ 전국작은도서관통합 홈페이지<sup>62)</sup>의 2016년 전국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의 경우 전국의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의 의무설치현황 및 실제 운영현황의 비교, 아파트 특성과 관련한 실질적인 운영주체의 형태 등에 관한 자료가 없음.

60) 국가통계포털 사이트 <<http://kosis.kr>> (2017,09.12)

61)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사이트 <<https://www.libsta.go.kr>> (2017,09.12)

62) 전국작은도서관통합 홈페이지 <<http://www.smalllibrary.org>>

## 2. 통계적 기반 구축의 필요성

### □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의 내실화를 위한 토대

▶ 전국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은 매년 증가되고 있으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설치 의무화로 인해 아파트의 건설이 지속되는 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추세임.

▶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의 양적 증가와 함께 질적 성장을 위한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각종 조사 및 연구가 활성화 될 필요가 있음.

▶ 연구를 위한 기초 통계자료로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의 통계적 기반이 충실히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전국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 전국의 의무설치대상 공동주택단지 현황, 설치 된 공동주택단지 현황, 자치단체에 등록 된 작은도서관의 현황, 실제 운영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수 등의 통계현황이 작은도서관의 현황파악과 질적 향상을 위한 연구에 활용하기 위한 도구로써 절실히 필요함.

### □ 평가지표의 개선

▶ 작은도서관의 평가지표는 정확한 활성화의 정도와 다양한 관종별 작은도서관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게 하여 정확한 진단과 함께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됨.

▶ 2016년(2015년 실적)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서 실시한 공공도서관 통계조사보고서의 평가지표와 작은도서관실태조사의 평가지표를 살펴 본 결과 <표 27><sup>63)</sup>과 같이 작은도서관의 운영 평가기준과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제외)의 운영평가기준이 크게 다르지 않음.

- 작은도서관의 역할에 따른 관종 및 공사립 작은도서관의 운영평가지표의 다원화가 필요하며 이는 질적 성장을 도움.

▶ 공동주택이 가지는 특성을 고려 한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의 활성화 척도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가 필요함.

63)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2016년도('15년 실적)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지표 p1 공공도서관 평가항목과 2015년도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및 운영평가 결과보고서 p156 작은도서관 운영평가지표 배점표의 사립 작은도서관 평가항목을 비교하여 재구성함

<표 27>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평가지표 비교

평가영역	공공도서관	배점(점)	비율(%)	작은도서관	배점(점)	비율(%)
도서관경영	계획·정책연계	200	20	예산	20	20
	교류·협력	60	6	교류협력	7	7
인적자원	인적자원	145	14.5	인력	28	28
시설환경	시설	30	3	시설	10	10
정보자원	장서	165	22	자료	15	15
	정보자원 협력	55				
서비스	정보서비스	115	34.5	이용자서비스	20	20
	독서·문화서비스	90				
	정보격차해소서비스	40				
	혁신사례 및 우수성	100				
합계		1,000	100		100	100

### 제3절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의 활성화 기반 구축

#### 1,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운영의 문제점

##### □ 운영주체와 관리주체

- 국민임대주택단지는 분양아파트와는 달리 입주자대표회의가 존재하지 않으며 대신 임차인 대표회의를 둬.
- 임차인대표회의의 권한이 적고 보통 운영이 되지 않는 현실임.
- 관리주체의 경우 위탁 또는 직영이며 분양 공동주택에 비해 관리사무소의 결정권이 상대적으로 강하고 단지 내 관리외수익에 대한 지출과 공동체활성화 및 주민공동시설 운영에 관한 결정을 주도적으로 함.
- 관리사무소장의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공동체 활동의 편차가 큼.
-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중 작은도서관이 중심 활동을 하다 보니 마을 공동체의 구심점 활동의 역할이 커져 도서관 고유의 독서문화 고유의 기능이 약화되는 경향이 있음. 실제로 청주의 경우 도서관 동아리의 핵심인 주민독서동아리가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운영된 곳은 가로수마을작은도서관이 유일함.
- 국민임대주택단지의 분양 조건상 주민의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 맞벌이 비율이 높아 평일 낮 시간동안에 활동하는 주민활동가를 구하기 어려움. 전업주부의 경우 미취학아동 연령대의 육아로 인해 활동이 용이하지 않거나 기타 경제활동 등에 대한 준비로 활동이 어려움.
- 사람을 중심에 두지 않고 눈에 보이는 성과위주의 지원이 이루어지다보니 도서관 설립과 책 지원은 이루어지나 운영에 대한 지원이 없어 지원 사업에 의한 시설설립과 프로그램지원이 끝나면 도서관 운영이 어려운 악순환이 되풀이 됨.

## 2.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제언

### □ 마을도서관으로의 특색 살리기

- 내 집이라는 정주의식의 희박함은 역으로 특성화된 마을도서관을 만드는 데 효과적임. 국민임대주택단지가 모여 있는 성화동 같은 경우 걸어서 10분 거리인 각 도서관들을 특화하여 특색 있게 만드는 시도도 필요함.

- 생태, 역사, 어린이도서, 청소년, 성인문학 등 국민임대주택단지 아이들이 휴거라고 놀림을 받고 답을 만들면서 못 들어오게 하는 기피 대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문화의 중심으로 만들어 누구나 오고 싶어 하는 곳으로 변화시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함.

- 청주시의 성화5단지외 파레트도서관은 2016년 청주시에서 위탁 운영하는 장난감도서관이 옆에 생기면서 영유아도서를 확장하고 개관시간도 월~금에서 화~토로 바꾸었고, 2017년 성화4 단지에 개관한 '공동부엌 햇살'은 임대아파트의 주거 공간 특성인 작은 부엌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손님초대와 생일잔치 가족 행사 등 이웃 간의 관계 및 공동체 생활세계를 복원시키고자하는 활동공간으로 시도되고 있으며, 같은 공간에 있는 성화꿈터도서관도 생활 중심 도서관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음.

-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거점공간을 만들어 그물망처럼 네트워크를 조직하면 작은도서관을 중심으로 교육문화적 역량이 집중되고 발화되어 마을공동체의 구심점이 될 수 있을 것임.

### □ 교육문화센터기능의 인프라 구축

- 국민임대주택단지에 지역주민들의 교육 및 문화 복지 수준의 향상을 위해 교육문화복지센터와 같은 공간이 필요함.

- 국민임대주택단지외 인근지역사회 주민들의 센터 이용과 주민 간 교류를 통해 공동체시설의 활성화 및 지속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적극적인 소양을 갖춘 인력이 필요함.

- 교육문화복지센터는 기존의 영구임대아파트에 설치한 사회복지관과는 차별화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의 측면으로 그 중심에는 작은도서관이 있어야 함.

- 작은도서관 활동을 통해 주민이 활동가가 되고 주민활동가가 직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구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이러한 사회경제적 접근 역시 교육문화복지와 함께 일자리창출이라는 경제활동이 절실한 국민임대주택단지에서 꼭 필요한 부분임.<sup>64)</sup>

64) 2015년 성화개신죽림동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거주자 복지육구조사서에 따르면 고용 및 직업육구가 1순위로 나타남

## □ 법령정비를 통한 제도적 지원책 마련

- 국민임대주택단지는 국가와 자본에 의해 거주조건이 명시되어있는 불평등한 공간이므로 민간 분양단지와는 다른 사회경제적 지원정책이 필요함.

- 2016년 국토교통부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장기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발표했고 7월부터 시행되었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에 복지서비스시설을 직접·위탁 운영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 그러나 입주자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자활과 일자리, 노인, 장애인, 아동을 위한 돌봄 서비스 등 '삶의 질'에 대한 개념이 교육, 문화 영역을 제외한 복지 개념에 치우쳐져 있음.

- 주택시장의 양적확대와 소득분배의 불균형 속에서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는 어느 정도 효과를 가져왔으므로 이제 문제는 공급의 측면이 아니라 '주거의 질'로 모아져 사회적 불평등의 구조 속에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놓쳐 버린, 다양한 삶의 형태가 모여 있는 국민임대주택단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평생교육의 측면에서 함께 고민해야할 시점임.

- 법령 개선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 운동 등을 통해 국민임대주택단지 입주민들의 진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함.

## 제4절 네트워크 기반 구축

### 1. 공립공공도서관 네트워크

지역의 공립공공도서관과의 업무협력은 작은도서관의 경험과 이해를 바탕으로 다각도로 이루어져야 함.

#### □ 순회사서의 역할 제고 필요.

· 순회사서 제도는 작은도서관의 전문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음.  
· 단순한 업무 지원이 아닌 장기적으로 작은도서관이 지속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 주는 개념이 필요로 함.

·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한 기틀 마련 역할

- ▶ 프로그램 기획과 홍보를 통한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제고
- ▶ 자원봉사자 모집 및 봉사조직 구성을 통해 인력부족의 문제 해결
- ▶ 마을내 작은도서관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돕는 역할
- ▶ 관계망을 통해 주민조직 형성과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함

- 작은도서관의 인식개선과 중요성에 대한 전달자 역할
  - ▶ 자원활동가를 대상으로 한 작은도서관 활동의 동기부여 교육 수행
  - ▶ 자원활동가를 대상으로 한 도서관 관련 업무 교육 수행
  - ▶ 자원활동가를 대상으로 한 전문성, 역량강화 교육 수행
  - ▶ 이용자 교육을 통한 작은도서관의 인식 제고와 참여를 이끌어내는 역할
  - ▶ 관리사무소장 및 입주자대표회장 등과의 소통을 통해 작은도서관의 운영 현황 전달 및 운영에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가 협조 및 주체적인 참여를 권고하는 역할
    - ▶ 작은도서관에 대한 풍부한 경험으로 실무와 행정, 자원봉사자 조직 관리 등 전문성과 경험을 축적한 인력이어야 함.

## □ 공립공공도서관의 업무지원

- 작은도서관 업무전담화
  - ▶ 작은도서관지원팀 또는 업무 전담자를 지정하여 창구의 일원화를 통한 업무효율성 제고 필요요함.
  - ▶ 공립공공도서관의 사서의 경우 작은도서관 운영 경험이 전무하여 전반적인 운영을 총괄하는데 미흡하며 작은도서관의 특성을 파악하기 쉽지 않아 이해도가 떨어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담자 지정과 업무의 지속성을 보장 할 필요가 있음.
- 순회사서를 통한 업무 효율화
  - ▶ 행정서식 및 업무편람을 제작하여 온라인을 통한 지속적인 자료갱신과 배포를 통한 자료 공유 요구됨.
  - ▶ 작은도서관 운영시 필요한 각종 업무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 및 배포하므로 비전문가의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함.

## 2.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네트워크

### □ 관종별 특수성을 고려한 네트워크

- 전국 및 지역 단위의 작은도서관 협의회 형태 네트워크 형성됨
- 관종별 네트워크는 없는 상태임.
-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의 양적 증가와 공동주택단지 내에 존재하기 때문에 마주하게 되는 문제와 사례들을 공유하고 분석하여 관련 정책과 제도의 미비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함.
- 온라인의 자료공유와 사례공유의 형태로 카페나 블로그를 통해 시도할 수 있음.

## □ 마을 및 지구단위의 작은도서관 네트워크

·마을단위, 대규모 아파트 단지구역의 지구단위의 작은도서관 네트워크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및 작은도서관이 거점 공간의 역할이 가능함.

·마을단위의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간의 네트워크는 정기적인 회의 및 정보공유 등을 통해 마을단위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등을 추진하는데 효과적임.<sup>65)</sup>

·마을 전체의 독서문화를 확산시키고 독서와 평생학습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에 용이함.

·지구 단위의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네트워크는 대략 6~9개 정도의 아파트가 서로 하나의 지구에 포함되는 형태로 연합하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모임 및 관리사무소장 등과의 관계 형성에 용이함

·마을 조직간의 관계를 통한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과 운영주체의 협조에 대한 인식을 전파하고 공감대 형성을 통한 지원책 마련에 용이함.

## 3. 시민사회 네트워크

### □ 단체 또는 공동체 유경험 활동가의 지원

·단체 및 공동체 조직에서의 활동을 이미 경험한 활동가들의 경우 기관 사업이나 운영 및 관리 업무능력을 보유함.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아파트 입주초기 활동가를 파견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조기에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작은도서관과 그 외 조직들의 운영 및 관리와 사무행정 업무를 지원하고 운영자 교육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인력과 재정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역할이 요구됨.

·기존 활동가의 역량강화 교육 후 인큐베이팅 지원을 통해 다른 작은도서관의 운영활성화에 기존의 유경험 활동가들이 기여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함.

65) 박민주,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 (석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 일반대학원. 2017), 99.

## □ 작은도서관을 통한 시민의식 향상

·마을 밖 시민사회단체들과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의 협력은 구체적인 방법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음.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은 지역의 숨은 활동가를 발굴하고 성장시켜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역할을 함.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 가능한 작은도서관의 이용자범위의 특성과 마을단위의 뛰어난 접근성을 활용하여 시민사회단체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민주시민양성, 환경보호, 인권보호 등 다양한 관련교육을 수행하여 작은도서관을 통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목표를 실현하는데 용이함.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이용자는 새로운 정보를 얻고 관심을 가지게 되어 활동가로 성장하며 궁극적으로 지역의 시민의식 향상에 기여하게 됨.

·충북NGO센터는 2017년 11월부터 청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와 연계하여 작은도서관을 통해 찾아가는 ‘민주시민양성교육’을 진행함.



## 제 6장 결론 및 제안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시 그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어 매년 증가되는 추세다. 또한 작은도서관 중 유일하게 의무에 의해 설치되며 공동주택이라는 공동 재산권 내에서 운영되는 특성이 있다. 그러나 법과 제도에 이러한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설치에 대한 의무 외에 운영과 관련된 의무규정을 담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전문인력의 부재 및 재정부족, 법령의 미비함 등으로 작은도서관의 운영과 질적 성장이 어려우며 이는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저해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과 작은도서관 관련 법령을 비교분석하고 정책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각기 다른 위치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 개선책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은 개인주의적 특성이 강한 아파트 생활에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적 개념을 전파하여 고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현대사회의 문제점과 사회적 비용을 공동체적 가치를 통해 감소시킬 수 있으며 다양한 정보 공유를 통해 투명하고 건강한 공동체 문화와 민주적 아파트 운영을 용이하게 한다. 더욱이 공동주택단지 내 복리시설 중 유일하게 남녀노소의 경계가 없는 공간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인 영유아 및 노인, 육아와 가사로 시간이 부족한 전업주부, 학업으로 바쁜 학생과 퇴근이 늦은 직장인 등 공립 공공도서관의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의 독서문화 증진과 평생학습을 돕고 초고령화 사회의 진입으로 그 필요성이 강조되는 평생교육을 쉽고 편하게 실현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서 역할을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역할을 기대하는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의 문제점을 제도적 관점, 통계적 관점, 네트워크적 관점에서 살펴보았으며 지금까지 논의되지 못했던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첫째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의 제도적 기반의 문제점으로 운영 및 관리주체의 불명확성 및 공동주택관리법을 기반으로 한 관리규약과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작은도서관과의 갈등, 「도서관법」의 공공성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2의 상호 충돌되는 이용자 범위, 「도서관법 시행령」제19조가 보장하는 도서관에서 징수할 수 있는 사용료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8조제1항 관련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의 기부금품 모집과 충돌되는 국토교통부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의 모순점, 장애인 및 영유아가 접근하기 쉬운 공간의 배치 및 독서문화 활동을 용이하게 하는 공간구성에 대한 법적 설치기준의 미흡함 등을 살펴보았다.

둘째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의 통계적 기반의 문제점으로 법정 의무시설로의 공동주택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통계와 사업승인 후 실제 운영 여부에 대한 조사 및 통계자료의 미흡 등으로 인한 현황 파악의 어려움과 관리 미비 등을 살펴보았다.

셋째 네트워크적 기반의 관점으로 공립공공도서관 네트워크 지원의 다양성 미흡, 운영 형태별 네트워크 부재로 인한 정보공유 및 문제에 대한 개선점 도출의 어려움, 관련 정책과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연대의 부재, 마을 및 지구단위의 작은도서관 네트워크를 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거점 공간으로서 역할 등을 논하였다.

넷째 국민입대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중요성에 비해 특성에 따른 지원책 미흡과 사회적 인식개선의 노력 등이 부족하며 활성화를 위해 마을도서관으로의 특성화 및 취약계층의 교육문화센터기능의 인프라 부족 등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으로 제도적 기반 구축을 통한 운영 및 관리 주체의 법적 명확화, 운영과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의무 사항 법률 명시,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집 운영 관련 법규와 같은 예외성 인정,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와 운영주체의 법정 의무교육시 작은도서관 운영관련 교육이수 제도화, 주민공동시설로서 작은도서관의 이용자 범위에 대한 공동재산권의 보장 관점과 도서관으로서의 공공성 저해에 대한 논의 및 합의점 마련을 통해 관련 법안의 개정 도출과 현장에서의 갈등과 혼란 해소, 도서관법이 보장하는 사용료와 기부금 등의 목적성을 침해하는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 대한 관련 부처 및 담당자의 문제점 인식과 관련법 개정,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 상향조정과 시설의 배치와 공간구성에 대한 기준제시 및 물리적 접근성과 편의성 확보를 위한 관련법규 구체화, 자치단체의 공동주택단지 내 의무설치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감독 의무화를 제안하였다.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의 질적 성장을 위한 연구 자료로서 통계적 기반 구축이 절실하며 이에 전국의 의무설치대상 공동주택단지 현황, 작은도서관의 설치여부, 자치단체의 등록여부, 실제 운영여부 등을 알 수 있는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의 구체적인 운영현황과 통계자료의 필요성, 국가통계포털 공공도서관 통계현황에서 작은도서관 현황자료의 필요성, 공동주택단지의 부대복리시설 통계현황의 작은도서관 통계 부재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또한 작은도서관의 실태조사를 통한 관종별 특성 파악과 이를 고려한 운영평가지표의 개선을 제안하였다.

네트워크 기반 구축으로 관종별 소규모 네트워크 결성을 통해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의 문제와 사례를 공유하고 분석하여 관련 정책과 제도 개선을 도모하며 마을 및 지구단위의 작은도서관 네트워크를 통해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거점 공간으로서 역할을 제시하였다.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은 사립 작은도서관 중 유일하게 법으로 설치가 의무화 된 곳으로, 설립자의 의지로 만들어진 다른 사립 작은도서관들과 달리 운영의지와 책임 및 주체성이 부족하여 설립과 동시에 운영 인력과 재원마련에 대한 의무를 제도화해야 한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지원은 지양해야하며 지원방법과 규모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민간운동의 주체성과 역동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한 범위를 찾는 조화로운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 단행본·연구보고서·자료집

권우상 외 5,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해설서」. 서울: 한국감정원, 2016.

류반디 외4, 「작은도서관 운영매뉴얼」.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2014.

(사)작은도서관을만드는사람들. 「2016년도 작은도서관실태조사 및 운영평가보고서」.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2017.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전국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및 운영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2011.

### 논문

박민주.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 석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 일반대학원. 2017.

### 법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17.10.19.] [법률 제14793호, 2017.4.18., 일부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7.10.19.] [대통령령 제28350호, 2017.9.29., 일부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7.10.19.] [국토교통부령 제452호, 2017.10.18., 일부개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도서관법」 [시행 2016.8.4.] [법률 제13960호, 2016.2.3., 일부개정]

「도서관법 시행령」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7.4.28.] [기획재정부령 제620호, 2017.4.28., 일부개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시행 2017.6.20.] [대통령령 제28132호, 2017.6.20., 일부개정]

「주택법」 [시행 2017.10.19.] [법률 제14793호, 2017.4.18., 타법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7.10.17.] [대통령령 제28373호, 2017.10.17., 일부개정]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7.10.17.] [대통령령 제28374호, 2017.10.17., 일부개정]

충청북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제11차 개정), 2017.3.10. 확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약칭: 학원법) [시행 2017.3.21.] [법률 제14403호, 2016.12.20., 일부개정]

### 전자자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http://www.libsta.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네이버 지식백과 부동산용어사전. <<http://terms.naver.com>>

다음지도. <<http://map.daum.net>>

연합뉴스. <[http://prlink.yonhapnews.co.kr/view.aspx?contents\\_id=RPR20161012016800353](http://prlink.yonhapnews.co.kr/view.aspx?contents_id=RPR20161012016800353)>

작은도서관통합홈페이지. <<http://www.smalllibrary.org>>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http://myapt.molit.go.kr>>

청주시립도서관. <<http://library.cheongju.go.kr>>

청주시청 홈페이지. <<http://www.cheongju.go.kr>>

충청북도 홈페이지. <<http://www.chungbuk.go.kr>>